

국제농업협력사업 중장기 추진 방안

김 용 택 선 임 연구 위원
허 장 연구 위원
김 정 승 연구 위원
박 복 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태 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담당

김 용 택	선 임 연 구 위 원	연구 총괄
허 장	연 구 위 원	제1~3장 집필
김 정 승	연 구 위 원	자료 수집 및 정리
박 복 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4장 집필
이 태 희	한 국 개 발 연 구 원	제5장 집필

머 리 말

농림수산물부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고, 2010년에는 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글로벌농림수산물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총괄 관리기구를 우리 연구원에 설치하였다. 2009년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농림수산물분야 ODA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제 농림수산물 국제협력이 그 기초를 다지고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농업협력 부문에 대한 중장기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협력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기관 간의 역할분담에 관하여 제언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업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중점협력 대상국가와 대상분야의 선정, 사업의 종류 및 형태별 발굴과 평가 등 체계적 관리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 사업의 효율적,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확보 방식의 변경과 조직개편에 관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농림수산물분야 국제협력은 우리나라 전체 ODA 체계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인 바, 이 보고서가 이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2010.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요 약

-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양적 증가 추세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안정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

-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의 설정
 - 비전: 저개발국과의 공존, 공영을 위한 농업·농촌개발협력
 - 목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식량안보와 빈곤탈피를 지향한 전략적 농림수산협력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
 - 추진방향: 사업 간 조정역량 제고, 사업성과 위주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관련기관의 역할분담
 - 농식품부와 외청,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국제협력사업은 농식품부가 총괄하여 조정
 -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의 협력사업 심의, 조정기능 강화
 - ‘(가칭)글로벌농림수산협력센터’의 설립, 「(가칭)농림수산분야 대외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장기적으로 농림수산분야 대외 무상원조 사업을 농식품부가 총괄, 집행

- 중점협력대상국, 사업 분야의 설정
 -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우선 협력권역으로 설정, 단계적 확대
 - 전략적 협력대상국(자원, 정치적 관계 등 고려), 일반적 협력대상국(협력 수요, 수용능력 등 기준 적용) 선정

- 협력대상국에 관한 현황자료 수집 및 조사, 민간부문 해외농업개발과 연계하여 농업 투자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 국가별 수요, 인도적 고려, 국가의 대외 이미지 제고, 해외자원 확보 등의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의 선정

□ 사업추진 방식의 체계화

- (사업종류) 기획사업,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 경험전수사업, 일반사업으로 구분
 -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은 궁극적으로 기획사업의 범주에 포함
- (사업발굴) 서면수요조사, 기존 사업의 후속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대상국의 수요에 입각한 사업 발굴하고 수요평가를 거쳐 확정
 - 일반사업의 경우 단기간, 소규모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시행자를 모집하는 방식 추가

□ 예산확보 방식 및 기구 개편

- 예산지원 관련 법령의 도입으로 사업비 지급근거 마련
-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 차원에서 예산확보 방식을 현재 보조금 방식에서 출연금 방식으로 개편
- 농식품부, 외청 및 소속기관, 유관기관·단체의 협력사업 전체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조직 개편
 - (1단계) 현행 조직의 확대 → (2단계) 별도 출연기관(법인)의 설립

ABSTRACT

Mid- to Long-term Approach to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jects

It is necessary to have mid- to long-term approach to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jects, following the increasing trend of the budgets of the projects.

We set the vision as to pursue the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with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e projects shall be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national brand value through strategic cooperation which aims for food security and poverty elimination in the developing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MIFAFF) needs to control and coordinate all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which are undertaken by all affiliated administrations besides its own projects. The functions of the "Council for Global Agricultural Cooperation" shall be strengthened for more effective coordination of cooperation projects. The establishment of "Global Agricultural Cooperation Center" and enactment of "Ac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re also crucial. In the long run, the MIFAFF should take over all international aid projects in the agricultural sector.

For "selection and concentration," we suggest to focus on the south-east Asian region and Africa first as key target areas for cooperation. For target countries, it needs to distinguish strategic cooperation countries and general cooperation countrie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for agriculture, or CASA, is to be prepared for efficient discovery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s.

Categories of projects are: special type projects, international collaborative projects, experience transfer projects and general type projects. To discover potential projects, diverse survey should be used including survey in written form. Some small, general type projects which have shown excellent performances can be expanded to become special type projects. International collaborative projects,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in project formation and initiation, need to be categorically combined with the special type projects.

For sustained and secure implementation, stable supply of budget is crucial. It can only be possible through introduction of relevant law or regulations which would have clauses on the budget. Current method of budget, subsidization, should be changed to the contribution method so that the implementing agencies can stably perform the projects. Following the change in budgeting, a separate control organization, as corporative body, should be established.

Researchers: Yong-taek Kim, Jang Heo, Jeong-seung Kim, Bok-young Park,
Tae-hee Lee

Research period: 2010. 6. - 2010. 11.

E-mail address: yongkim@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제2장 비전, 목표,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5
제3장 추진과제별 세부 방안	
1. 관련기관의 역할 분담	7
2. 중점협력대상국, 사업 분야의 설정	11
3. 사업추진 방식의 체계화	17
4. 예산확보 방식 및 기구 개편	22
제4장 농업분야 개발협력 중점지원 대상국 선정 사례	
1. 국제사회의 농업부문 원조동향	27
2.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중점지원 대상국 선정	35
제5장 국제협력사업 추진 방식의 체계화 방안: KSP 사례	
1. 서론: 프로젝트 디자인 시 중요사항	43
2. 사업종류의 체계화	45
3. 사업별 추진방식	54
4. 결어 : 시사점과 고려사항	64
부록 1: 2010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전략	67
부록 2: 국제농업협력 시스템 구축	68

부록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국제협력 관련조항	69
부록 4: 농업관측사업 실시요령	70
부록 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09. 5. 27) 및 시행령 중 관련조항	71
부록 6: 농업분야 중점지원대상국 선정지표	76

표 차 례

제3장

표 3-1. 중장기 권역별 우선순위 적용 원칙	12
표 3-2. 범주별 기준	13
표 3-3. 중점협력 대상사업분야의 선정	16
표 3-4.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	23
표 3-5. 형태별 방안의 장단점	25

제4장

표 4-1. DAC 회원국별 농업분야 원조 규모 및 비중	29
표 4-2. 농업분야 최대 수원국(2006~2007년 평균 기준)	31
표 4-3. 주요 공여국별 농업원조 10대 수원국(2006~2007년 평균)	33
표 4-4. 주요 공여국별 전체 원조 10대 수원국(2006~2007년 평균)	34
표 4-5. 농업분야 중점지원대상국가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 및 지표	36
표 4-6. 요소 및 세부요소별 가중치	39
표 4-7. 농업분야 중점지원대상국 선정결과	40

제5장

표 5-1. 제안서 평가기준	63
-----------------------	----

그림 차례

제3장

- 그림 3-1. 사업별 추진흐름도 21
- 그림 3-2. 보조금 방식에서 출연금 방식으로의 전환 24

제4장

- 그림 4-1. DAC 회원국 및 다자기구의 농업분야 원조액 추이
(2007년 불변달러) 28
- 그림 4-2. DAC 회원국의 농업분야 원조 규모 및 비중 28
- 그림 4-3. 농업분야 원조 수혜의 지역별 및 소득수준별 분포 30
- 그림 4-4. 저체중아 비율과 1인당 농업원조 수원액의 관계 30
- 그림 4-5. 농업원조의 분야별 비중(2006~2007년 평균 기준) 32

제5장

- 그림 5-1. KSP사업 진행 단계 흐름도 60

제 1 장

서 론

2000년대 중반 세계적으로 곡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기아 및 빈곤에 허덕이는 세계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10억 명 이상이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식량공급(food accessibility)뿐만 아니라 식량확보(food availability) 자체가 여의치 않다. 아프리카의 경우 영양결핍 인구가 전체의 4분의 1인 2억 5,000만 명에 이르며, 이는 지난 20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다(25.3%('90~'92) → 25.5%('00~'07) (African Statistical Yearbook, 2009)).

농림수산분야의 국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농업개발 지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농업은 이들 나라의 기간산업이며, 빈곤인구의 4분의 3이 농촌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농업과 농촌이 발전하여야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새천년개발목표(MDGs) 역시 저개발국의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촌개발로 그 달성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세계 유일의 국가로 그 발전경험에 대한 전수 수요도 매우 높다. 우리가 이룩한 압축적 경제성장은 많은 개도국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도 새마을운동, 녹색혁명과 농업기술 개발 등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가 높아 지원 요청이 늘고 있다.

2006년 이래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국제협력사업은 양적으로 팽창하여 왔고 2010년부터는 사업관리자가 직접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중장기형 기획사업 등 다양한 사업형태가 시작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사업 예산규모는 2006년 7억 7,700만 원에서 2010년 42억 1,8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또 201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가 국제농업협력사업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사업형태를 분류하여 추진하였다.

① 일반사업

- '09년 민간기관에서 수행한 기존의 국제농업협력사업 중 '10년 계속추진이 필요한 사업

② 기획사업

- 우리의 농업·농촌개발모델 보급을 위해 대륙별 거점국가에 대하여 인적·물적 지원수단이 결합된 패키지 방식의 지원 사업
예) 시범농장 구축+농자재 보급+기술 훈련+사후 관리

③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

- 식량안보,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국제기구* 및 제3국**과 공동프로젝트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
* FAO, WFP 등/ ** 미국 등

정부는 ODA 규모를 크게 늘려나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농업분야 ODA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높일 예정이며, 2011년도 국제농업협력예산은 100억 원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안정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이 연구는 협력사업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수립,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 등에 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위하여 농식품부 등 관련기관의 문헌, 법적 관련조항 등을 참고하였고, 국제개발협력 업무의 전문가 두 명에게 원고를 위탁하여 농업분야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에 관한 절차와 선정결과, 그리고 협력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시에는 국별 자료를 FAO, 세계은행, OECD 등을 통하여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2장

비전, 목표,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비전

- 저개발국과의 공존, 공영을 위한 농업·농촌개발협력

■ 목표

-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식량안보와 빈곤탈피를 지향한 전략적 농림수산협력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

■ 추진방향

- ① (사업 간 조정역량 제고) 관련기관·사업의 효율적 총괄과 조정
- ② (사업성과 위주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대상국 및 분야의 선택과 집중, 조사/연구의 강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
- ③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안정적 예산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 방안은 제3장에 기술한다.

① (협력사업의 조정, 총괄)

- 농식품부, 외청, 소속기관 사업의 조정과 총괄
- 중장기적으로 농림수산분야 대외협력사업의 이관, 총괄

② (중점협력 대상국, 분야의 설정)

- 중점협력 대상국에 대한 선택과 집중(전략적 대상국, 일반적 대상국) 및 조사/연구의 강화
- 대상국 수요와 우리의 역량을 고려한 중점협력 대상사업 분야의 설정

③ (사업추진 방식의 체계화)

- 사업의 체계적 분류(기획, 일반, 경험전수,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
- 사업발굴 방식의 다양화(서면수요조사, 정부요청 등)
- 사업별 추진방식의 표준화, 매뉴얼 작성을 통한 체계적 수행

④ (예산확보 방식 및 집행기구의 개편)

- 근거조항의 도입을 위한 예산지원 관련 법령의 정비
- 안정적 운용을 위한 예산지원 방식의 개편(보조금 → 출연금)
- 협력사업 관리조직의 단계적 확대 개편(현 조직 확대 → 부설기관 → 별도 법인 독립)

제 3 장

추진과제별 세부 방안

1. 관련기관의 역할 분담

1.1.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기관별 업무 조정 및 전문성 확보 필요

국제농업협력사업은 추진주체가 다양화되고 있고 그 수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농촌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빠르게 이 분야의 사업규모를 확대하였으며, 농식품부, 외청, 소속기관에서는 베트남, DR콩고 등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에 대한 다양한 중장기, 단기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농식품부 협력사업은 농경연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를 통해 유관 공공기관, 대학교, 민간연구소 등이 시행하여 왔으며, 전체 사업비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국제농업협력사업 예산규모는 2006년 7억 7,700만 원에서 2010년 42억 1,8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협력 이니셔티브(AFACI, KAFACI), 해외농업개술개발센터(KOPIA) 등 농업기술협력 분야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산림자원 보유 저개발국, 몽골 등 사막화 진행국 등과 조림, 양묘사

업 등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수의과학검역원, 국립종자원 등 소속기관에서는 개도국 공무원 연수, 물자지원 등 단기적 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 농업분야 국제협력사업 관련기관

- 정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 외청 및 소속기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등
- 유관 공공기관: KREI, 한국농어촌공사, 식품연구원 등
- 민간기관: 강원대학교, FAO한국협회 등

2010년 정부는 중복지원, 전문성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관련 절차와 기구를 수립하였다. 국가적으로 ODA 사업 규모가 급증하고 추진주체가 다양해지면서 협력사업의 중복성 여부, 사업성과 등에 대한 통합평가의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국무총리실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이 제정('10.7)되고 총리실에 부서를 신설(국정운영1실 산하 개발협력정책관)하였으며, 각 부처사업에 대한 통합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부처별 사업에 대한 연계를 추진(가령 새마을운동 등)하고 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는 본부, 외청 및 소속기관 사업에 대한 자체 조정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농식품부 제1차관) 및 동실무협의회(위원장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등 추진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으로 국제농업개발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외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는 수원국 개발수요를 반영함에 있어 긍정적이나 사업기획, 관리, 운영, 사후관리 등에서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등과 소속기관은 농업 기술, 수의검역 등 전문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국가별 유사 혹은 연관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원조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획사업, 일반사업,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 등 사업 추진과정에

서 전문성 있는 사업자를 발굴하고 대상국 내 사업 간 연계를 확보하기 위한 총괄적 조정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1.2. 협력사업의 조정, 총괄

1.2.1. 기본방향

농식품부와 외청,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국제협력사업은 농식품부가 총괄하여 조정한다. 농식품부 내 구성된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와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홍보 등을 담당할 법인을 설립하며, 관련법을 제정 혹은 개정한다. 장기적으로 농림수산분야 대외 무상 원조 사업은 농식품부가 총괄, 집행할 필요가 있다.

1.2.2. 농림수산식품부, 외청, 소속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

농식품부,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협력사업은 농식품부가 총괄하여 조정한다.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한 총괄적 심의기능을 강화한다. 즉 중점 협력 대상국 및 분야 등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청 및 소속기관이 제안하는 협력사업에 대해서 이를 심의·조정하며, 기타 농림수산분야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한다. 위원은 정부부처 1급 이상으로 격상하여 구성(현재는 혼재)하며, 민간위원의 숫자를 늘려 실질적 심의기능을 강화(현재는 15명 중 3명)한다. 또 연 1회 이상 정기적 개최를 명문화(당해연도 예산 및 사업심의와 연계되도록 3월 이전)하고, 산하 실무협의회는 수시 운영한다. 필요시 분과 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예산 및 사업에 대한 정밀심의)한다.

법적 출연기관에 의한 사업 집행을 위해 협력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홍보 등을 담당할 법인(‘(가칭)글로벌농림수산협력센터’)을 설립(아래 ‘3. 예산확보 방식 및 기구 개편’ 참조)한다.

국제농업협력의 추진과 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을 위해 기존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하거나 「(가칭)농림수산분야 대외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추진한다. 이 법률에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협력사업은 농식품부가 총괄하여 조정하도록 명기함으로써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 운영, 글로벌농림수산협력센터 설립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도록 한다. 법률 제·개정과 관련하여서는 「농림수산식품과 학기술 육성법」(’09. 5. 27)에 의한 체계를 벤치마킹한다.

1.2.3. 농업분야 무상원조 사업의 총괄

장기적으로는 현행 KOICA의 농업분야 무상원조 사업을 이관하여 농림수산업 개발분야 및 농촌개발 분야에서 전문성에 입각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 전문성에 입각한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추진의 근거

- 농업부문 협력사업의 증가로 보다 전문성 있는 조직에서의 사업추진 필요성 증대
 - 부처를 통한 정부 간(G to G) 협력사업 수요가 증가하여 왔으며, 앞으로 늘어날 전망
 -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09.6),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09.11)에서 대개도국 농업협력 증대 천명
 - * 정부간 농업협력약정 체결국 증가(’09년 9개국 → ’10년 16개국)로 양국 농업관련 부처 간 협력수요 증가
- 전문성을 갖춘 정부 소속기관, 유관기관의 경우 농업분야 내에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사업추진 가능
 - * 예) 농업·농촌개발 계획수립(농촌경제연구원)+관개수로정비 등 농업 인프라 건설(농어촌공사)+농업기술 개발 및 전수(농촌진흥청)

- 전문기관, 전문가의 파악과 동원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의 발굴과 추진, 효과성 평가가 가능
 - 기존의 분야별 네트워킹을 활용하므로 수원국과의 사업발굴 협의, 사업집행에 이르기까지 수원국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
- 수원국 내부의 사정으로 후순위에 머무르게 되는 주요 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가능
 - 수원국 총괄기관의 자체 사업순위 조정과정에서 농업·농촌개발 분야는 뒤처지는 경향이 있음.
 - 개도국 농업인구의 비중, 빈곤인구의 농촌거주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수원국의 사업순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2. 중점협력대상국, 사업 분야의 설정

2.1. 중점협력대상국 선정과 조사

2.1.1. 기본방향

권역 및 국가별 특성, 우리나라의 원조 전략을 고려하여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되, 전략적 목적에 따른 선정과 일반적 기준에 따른 선정을 구분한다. 특히 국무총리실이 설정한 유·무상원조 통합 중점협력국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력대상국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축적한다.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도 수집, 조사하도록 한다.

2.1.2. 권역구분

권역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사하라 이남), 중남미, 아시아 기타(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태평양 도서국), 동유럽으로 구분한다. 권역 간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우선 협력권역으로 설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표 3-1. 중장기 권역별 우선순위 적용 원칙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권 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기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기타* 동유럽

*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CIS 국가), 태평양 도서국.

2.1.3. 협력대상국의 구분과 선정

협력대상국은 전략적 협력대상국과 일반적 협력대상국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전략적 협력대상국은 부존자원, 민간부문 경제협력 현황 및 잠재적 가능성, 정치·외교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면 자원, 에너지 부국, 민간부문 진출확대 국가, 또는 VIP나 고위인사의 해외순방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국가 등이다. 농식품부와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정하며, 필요시 관련부처 및 기관(가령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KOICA)과 협의한다.

일반적 협력대상국은 전략적 협력대상국이 아닌 국가 중 일정한 기준에 의

거하여 선정한다.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2~3년마다 기준을 재적용하며, 권역별로 5~10개국을 선정한다. 또 국가 전체 ODA 정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 여부를 선정기준에 포함한다.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은 현재 26개국이 선정되어 있다.

농업협력사업 예산 중 협력대상국에 대해서는 협력사업 예산의 70% 정도를 우선 배정한다.

아래 <표 3-2>는 중점협력대상국 중 일반협력대상국 선정을 위한 기준(안)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제4장은 이 기준에 의거, 시범적으로 농업분야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해 본 것이다.

표 3-2. 범주별 기준

범 주	기 준
협력 수요(needs)	일반적 수요(general needs) 농업·농촌개발 관련 기준(agricultural and rural need)
수용능력 (policy environment, absorption capacity)	정책역량 혹은 governance 농업부문 수용능력 혹은 발전정도
양자 관계(bilateral relations)	양자 간 경제적, 외교적 관계 양자 간 농업부문 협력(MOU, 기타 협력 사업 경험, 농산물 교역정도)
국가 ODA 정책과의 정합성 (policy coherence)	유·무상원조 통합 중점협력국 여부
기타 질적 평가 (qualitative considerations)	

2.1.4. 협력대상국에 대한 조사연구 수행

사업 수요조사 이외에 대상국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한다. 국가현황, 농업 및 농촌현황, 각종 국가 및 부문계획, 국제기구 및 선진국 해외원조 등을 조사하고, 필요시 대상국 연구기관과 공동조사 및 연구를 추진한다. 또 해외농업개발과 연계된 여건을 조사하여 민간의 농업 투자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별 DB를 구축한다.

조사결과는 농업부문의 국별지원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Agriculture, CPSA)으로 채택하여, 해당국에 대한 국별지원전략(CPS)의 부문전략으로 활용한다. 국별지원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① 국가 농업현황

- 기후, 강우량, 태풍 등 재해 빈도, 토양 성분 등
- 농지면적, 농가호수, 주요 재배작물, 생산 및 가공, 농산물 수출입
- 농지제도, 농업기술보급체계, 수확후 관리체계, 유통 등
- 농업용수, 도로, 농기계, 농용자재 등 농업 인프라와 투입재

② 농업·농촌 문제의 분석

- 농업 생산, 수집, 저장, 가공, 유통, 판매, 수출 등 가치사슬 분석
- 농촌 빈곤, 생활환경 등 지역문제 분석
- 여성, 아동, 노인, 소수민족 등 취약계층 문제 분석

③ 대상국 국가개발 전략 평가

- 경제개발정책, 농업부문 개발정책과 전략, 농업부문 투자계획 등
- ODA 지원현황 및 관련정책

④ 우리나라의 농업·농촌부문 지원 목표 및 전략

- 지원현황, 지원 목표 및 주요 전략
- 비교우위가 있는 지원분야의 선택
- 대상국 국별지원전략(CPS)과의 정합성 판단
- 세부 전략의 수립
- 단계별 지원전략 수립

- 지원의 조정(유·무상 연계, 사업 간 연계, 타부문 지원 연계, 타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연계 등)
- 수원국의 자원동원 방안

⑤ 사후관리 방안

- 위험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M&E) 계획

2.2. 중점협력 대상사업 분야

2.2.1 기본방향

중점협력 대상분야는 권역별로 설정하되,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국가별 수요(needs)를 고려하여 인도적 고려, 국가의 대외 이미지 제고, 해외자원 확보 등의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한다.

2.2.2. 대상사업 분야의 구분 및 적용

세부 대상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적 지원으로, 기초 생활용품과 식량을 제공하고 기초수요(basic needs) 공급을 위해 종자, 농기구 등 기초 생산자재를 제공한다.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종자 및 종축개량, 농기계등을 제공하며, 농업 생산 인프라 개발을 위해 수자원 인프라(댐, 보, 용배수로, 관정 등)와 농촌도로(농산물 반출로, 마을 접근도로 등)를 제공한다. 농업유통 설비 및 시설은 농업 시설(저장창고, 가공장비 및 시설 등)과 도소매 시장을 제공하고, 생산기술의 연구 및 보급을 위해 시범포를 조성하고 시범농가를 운영하며 우량종자와 종축 개량에 대한 연구를 제공한다.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촌마을 종합개발도

포함하며, 중앙·지방정부 공무원과 전문가, 기술인력,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농업발전 추진체계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농업투자계획(Country Agricultural Investment Plan, CAIP) 수립을 지원하고, 농정추진 기구, 중앙, 지방 농정체계 개편을 컨설팅하며, 농업기술 보급체계와 각종 제도의 구축을 지원(농지제도, 농업금융, 협동조합 등)한다.

중점협력 대상사업의 적용은 대상국의 수요를 반영하되 세부사업은 국가별 발전수준(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표 3-3. 중점협력 대상사업분야의 선정

소득 수준*	중점 사업분야	대상국가 예
저소득 국가 (Low Income Country)	기초적 수요와 기초 식량 생산	DR콩고
하위 중간소득 국가 (Lower Middle Income Country)	생산성, 시장 접근성 증대	인도네시아
상위 중간소득 국가 (Upper Middle Income Country)	국가농정체계 수립 및 중대형 인프라	페루

* 소득수준 범주와 대상국가는 World Bank의 구분에 의함.

3. 사업추진 방식의 체계화

3.1. 사업종류의 체계화

3.1.1. 기본방향

사업형태의 다양화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패키지형(복합형) 사업과 단위형 사업 등 여러 형태로 사업을 발굴하여 협력대상국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사업형태를 설정한다. 수원국 농업·농촌 발전전략과 이에 입각한 지원방향 설정 등 농업부문 국별지원전략(CPSA)을 수립하고, 이렇게 수립된 지원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를 경험전수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일관성, 효율성, 전문성을 극대화한다.

사업종류별로 발굴방식과 추진방법을 체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발굴 방식을 동원하고, 사업의 효율적,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체계를 수립한다.

3.1.2. 사업의 구분 및 범위

기획사업은 농업·농촌분야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형 원조사업 중 사업관리자가 사업대상국, 사업내용을 발굴하고 사업수행자를 공모,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동일한 사업목적 아래 세부시설물 건축, 농자재 공급 등 물적 수단과 기술전수, 컨설팅,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수단과 같은 세부사업들이 상호 연계, 통합되는 3~5년 정도의 중장기 사업이다.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은 식량안보, 녹색성장, 빈곤퇴치를 위한 MDGs 달성 등 국제적 관심주제에 관한 협동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시설, 장비 제공, 기술협력, 컨설팅, 역량제고 등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우리의 실용적인 경험과 국제사회의 정보와 자금역량 등을 결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국제적 역량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이를 발현시

키는 기회로도 활용하도록 한다. 협동 대상은 FAO, IFAD와 같은 국제기구, 게이츠 재단과 같은 국제원조 NGO, 미국 USAID와 같은 원조 선진국 정부 등이 될 수 있다.

발전·지원전략 수립 및 경험전수사업은 협력대상국의 농업·농촌 발전전략과 이 부문에 대한 우리의 지원전략(CPSA)을 수립하고, 이에 입각하여 우리의 농업·농촌 발전 경험을 수원국의 경제 및 농업 발전 수준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국 발전 및 지원전략 수립, 전문가 파견 및 컨설팅, 국내초청 연수사업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며, 발전·지원전략 수립 대상국은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된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수립된 전략에 따라 추가적으로 전문가 파견 및 컨설팅과 초청연수를 시행한다. 국내초청 경험전수의 경우 정책연수와 현장훈련연수(on-the-job training, OJT)로 구분하고, 고위급은 정책연수, 실무자급은 현장훈련연수 위주로 운영한다. 이는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 그룹토의, 발표 등 다양한 연수형태의 결합하되, 수원국 및 연수생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실무자급 초청사업은 3개월 가량의 기간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획사업의 선행 혹은 후속조치로 연계 운용할 수도 있다.

일반사업은 사업관리자가 아닌 관련기관, 단체, 대학, 민간연구소 등이 발굴하는 사업으로, 대상국 담당부처(기관)와 사업추진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국제농업협력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이다. 사업의 규모는 5억 원 이하의 소규모이고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단기간에 걸쳐 시행하며, 다년간 시행되더라도 매년 사업지원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여러 세부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되더라도 기술협력 등 핵심 사업이 존재하고 나머지 사업은 이에 직접 연관된 범위에서 부수적 형태로 추진한다. 협력사업을 담당하는 민간부문의 역량제고와 네트워킹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다양한 네트워킹을 활용한다. 이 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민간단체와의 협력(제5조), 그에 대한 지원(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6조) 등을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반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중장기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3.2. 사업발굴 방식

3.2.1. 기본방향

서면수요조사, 기존 사업의 후속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대상국의 수요에 입각하여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사업발굴 방식을 다양화, 체계화하기 위해 사업발굴 루트를 이원화한다. 즉, 서면 수요조사를 통해 수시로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정부의 약속 혹은 대상국 정부, 국제사회로부터의 요청에 따라서도 사업을 발굴한다. 사업발굴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업발굴 절차를 매뉴얼화함으로써 일상적 발굴 활동이 이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수요 혹은 요청된 사업에 대한 수요평가(need assessment)를 시행하여, 사업의 성격, 필요성과 아국의 수행 여건 및 시행기관 여부와 능력 등을 검토한다.

3.2.2. 사업종류별 사업발굴 방식

기획사업은 전략적, 일반적 협력대상국에 대한 서면 수요조사를 통해, 그리고 일반사업, 전략수립 및 경험전수사업의 성과에 따라 후속사업 시행여부에 대하여 수요를 조사하여 발굴한다.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 추진 시 사업의 지연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매년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공동사업을 수행할 국제기구나 단체, 국가의 선정 및 공동사업의 제안, 사전협의, 사업 및 분담내용 확정, MOU 혹은 LOI 체결 등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은 사안과 정책결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고, 추후 기획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으로는 잠재적인 공동사업 대상 국제기구 또는 대상국 관련부처와의 네트워킹을 꾸준히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 협력관계의 수립을 위한 MOU 체결 등 협력 인프

라를 구축하고, FAO,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파견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발굴하며,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공동개최하거나 공동 연구 혹은 공동 사전조사 등을 시행한다.

발전·지원전략 수립 및 경험전수사업은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서면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국 선정 및 세부 전략수립 분야 등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기존의 기획 혹은 일반사업 성과를 심화, 제고하기 위한 후속사업 형태로 추진하거나,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하되 그 성과에 따라 신규 기획 혹은 일반사업을 발굴하여 후속사업으로 연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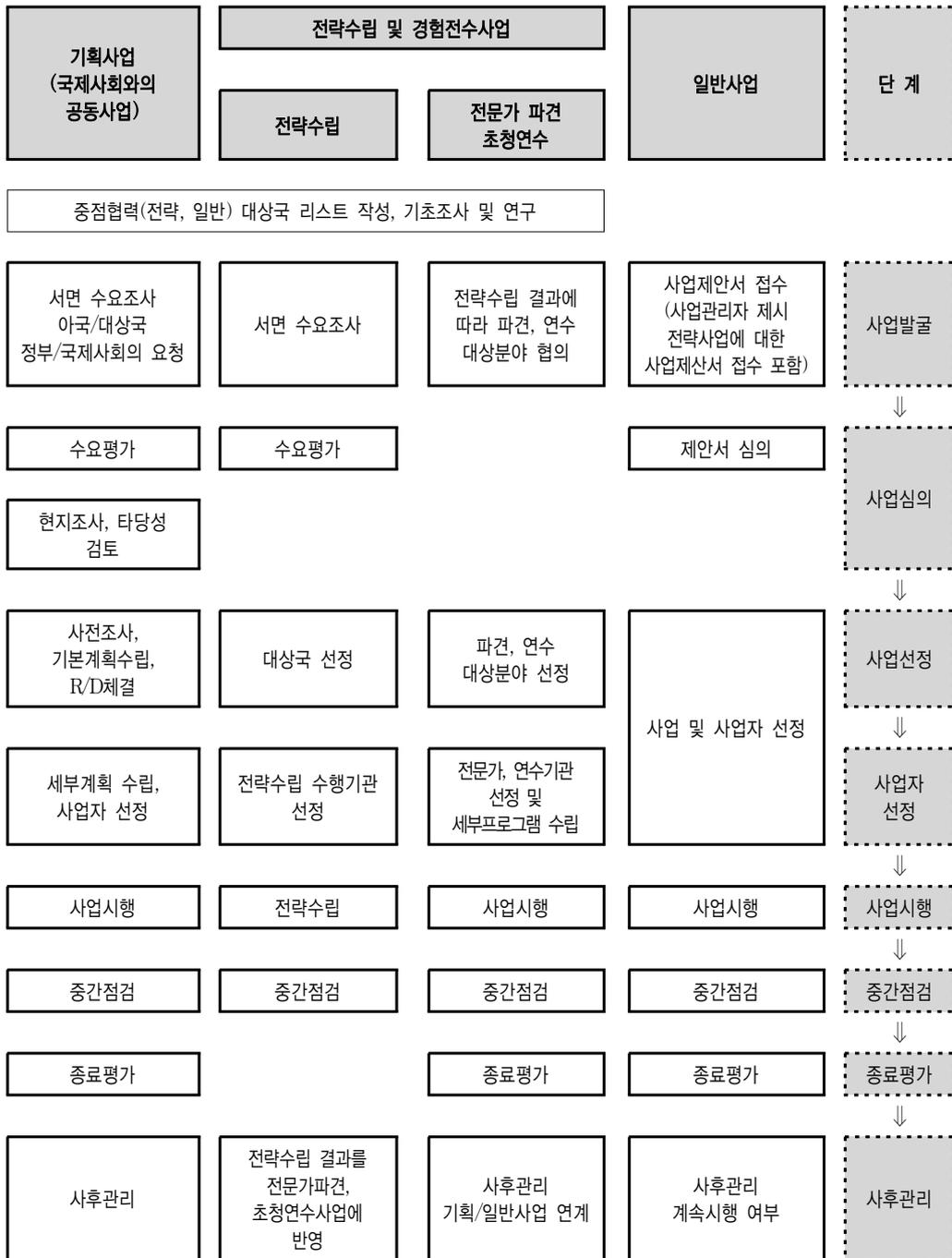
일반사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발굴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는 현재의 발굴 방식으로, 잠재적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신청하고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단기간에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전략적 사업에 대하여, 사업관리자 측에서 사업분야를 제시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시행자를 모집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추진 후에는 사업별로 엄격하게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으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사업 형태로 지속하거나 사업규모와 기간을 확대, 연장하여 기획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 반대로 성과가 낮을 시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3.3. 사업별 추진방식의 체계화

사업별 추진방식의 표준화 및 매뉴얼 작성을 위해 기획재정부/KDI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매뉴얼’, 외교통상부/KOICA의 ‘대외무상원조사업 시행절차’등을 참조한다.

사업별 추진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KSP 사업의 예는 <부록 4>).

그림 3-1. 사업별 추진흐름도



4. 예산확보 방식 및 기구 개편

4.1. 예산 지원방식의 개편

4.1.1. 기본방향

예산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지원방식의 효율적 개편을 추구한다.

4.1.2. 예산지원 관련 법령 등 개선

예산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나 동 협력사업 실시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부재하여 법령 등 근거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예산규모는 2011년 100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왔지만,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국제농업협력 조항이 나와 있을 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관련부처 훈령 제정 등 예산 지원 관련 법령을 도입하여야 한다. 정부 보조사업에 대하여 훈령을 제정하여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한 농업관측사업 사례는 「농업관측사업 실시요령, 농림부 훈령 제 1033호」 (<부록 6>)를 참조한다.

4.1.3. 예산 지원방식의 개편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방식별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집행을 위한 예산 지원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 차원에서 예산확보 방식을 출연금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보조금 방식은 시급한 정책 수립 등

단기 사업 수행 및 단기적 예산확대에는 유리하지만, 해마다 보조금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서 중장기 사업의 선정 및 추진, 사업의 안정적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기에는 출연금 방식이 효과적이다.

표 3-4.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

구분	보조금	출연금
개념	•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국가재원 교부	• 법률에 의한 지원 • 특정기관에 대한 일반재원 지원
개별 법적 근거	• 지급 근거 명시 • 개별법령에 지급 근거 불필요	• 반드시 개별법령에 지급 근거 명시
용도 지정 여부	• 반드시 사용 용도 지정 • 집행과정에 재량 불가	• 사용용도 지정하지 않음 • 일반재원 형태로 지원
집행 잔액 처리	• 사후정산 필요 • 집행 잔액 반환	• 사후정산 불필요 • 집행 잔액은 출연 받은 기관의 수입

※ 보조금 방식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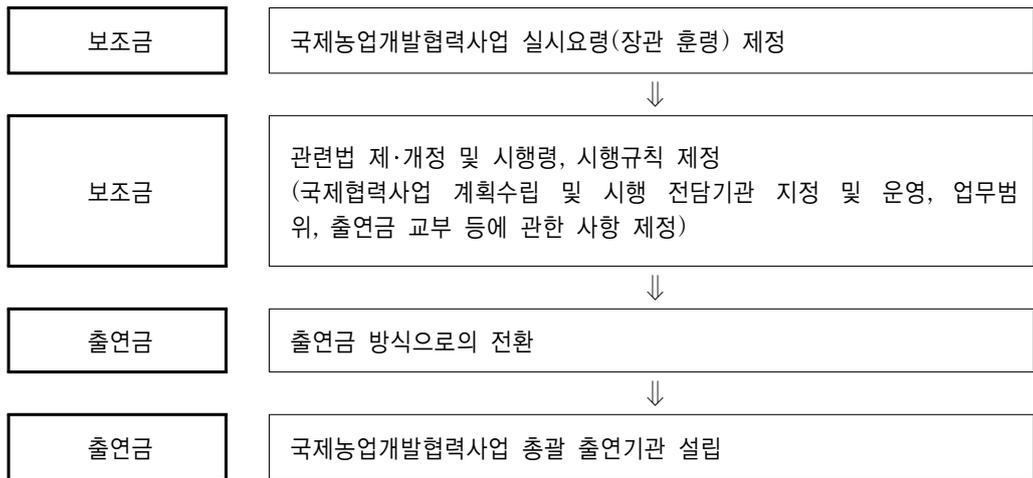
① 사업 선정 및 추진의 문제

- 보조금 규모가 매년 달라질 수 있어 중장기 패키지형 사업의 선정 및 추진 곤란
 - * 패키지형 사업: 인적, 물적 수단이 결합된 중장기 지원사업(예: 시범농장 조성+농자재 보급+기술훈련+사후관리)
- 국제기구, 제3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 추진 시 중장기 사업 선정 및 추진에 제한
 - * 국제사회와의 사업: 식량안보,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에 국제기구(예: FAO), 국제재단(예: 빌게이츠 재단), 제3국(예: 미국)과 공동수행
-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대상국과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차년도 예산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확실하게 지원약속을 할 수 없음.

- ② 사업관리의 문제
- 사업의 발굴, 선정, 평가, 홍보 등 협력사업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확보가 불안정
 - 안정적 사업관리를 위한 경험 있는 고정적 전담인력 확보와 사무국 유지에 애로
 - ☞ 농식품부 담당부서, 담당자와의 원활한 업무협력 관계 유지가 어려움.

현행 보조금 방식에서 출연금 방식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한다.

그림 3-2. 보조금 방식에서 출연금 방식으로의 전환



4.2. 협력사업 관리조직의 효율적 개편

4.2.1. 기본방향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4.2.2. 수행조직의 능력 향상을 위한 확대 개편

형태별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 형태별 방안의 장단점

방안	내용	장점	개선할 점
현행조직의 확대	현행 담당조직을 확대하여 전략기획, 관리·평가,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는 2~3개 팀을 설치	기관 내 규정개정으로 조직개편 가능하므로 간단	사업비의 급증 및 사업종류의 다양화에 따른 업무분장에 애로
별도 법인	별도의 법인 (농식품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	농식품부, 외청 및 소속기관, 유관기관·단체의 협력사업 전체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능	관련법 제·개정 및 별도법인 관련법 제정 필요

제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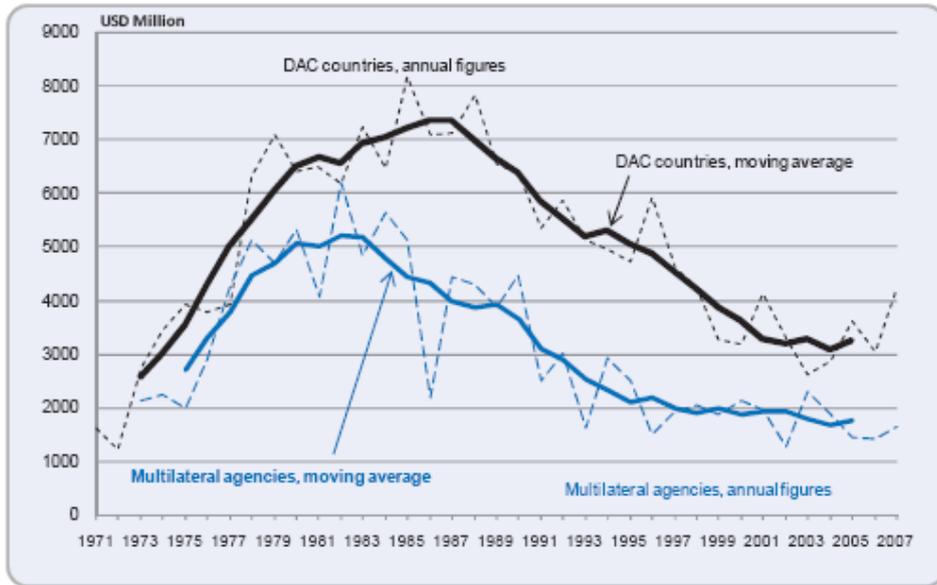
농업분야 개발협력 중점지원대상국 선정 사례

1. 국제사회의 농업부문 원조동향

1.1.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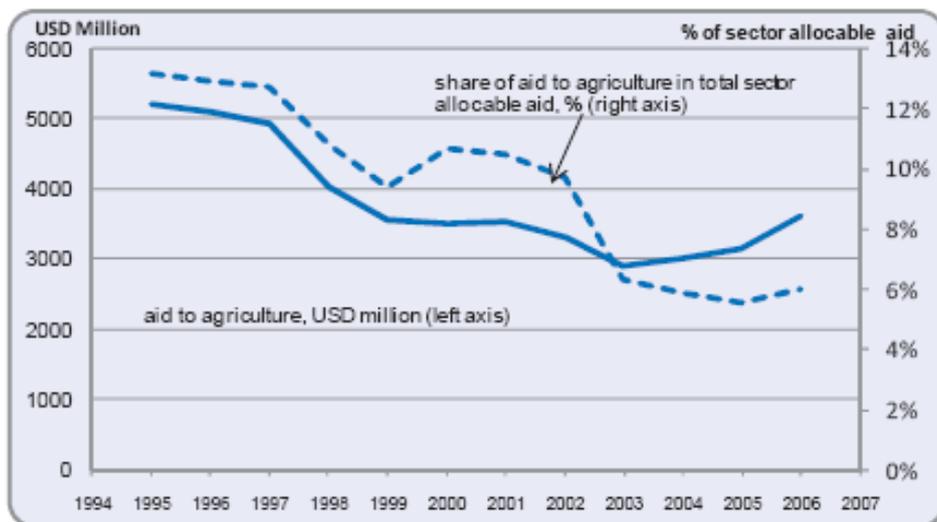
1980년대 중반 이후 농업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그 규모가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다. 2006~2007년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농업에 대한 양자원조는 38억 달러, 다자원조는 62억 달러였다. 최근에는 농업에 대한 지원이 다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02~2007년 농업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연평균 5% 증가하였다(OECD(2009), Creditor Reporting System: Aid Activities in support of Agriculture, 2007~2007). 2006~2007년에 농업 분야 최대 공여국은 미국(9.3억 달러), 일본(8.2억 달러), 프랑스(4.5억 달러)순이다. 양자원조에서 농업분야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DAC 회원국 평균 6%로, 이는 1994년 평균 13%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국가별로는 일본, 스위스, 벨기에, 스페인 등이 10% 내외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전체 원조의 5% 이하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 DAC 회원국 및 다자기구의 농업분야 원조액 추이(2007년 불변달러)



자료: OECD(2009).

그림 4-2. DAC 회원국의 농업분야 원조 규모 및 비중



자료: OECD(2009).

표 4-1. DAC 회원국별 농업분야 원조 규모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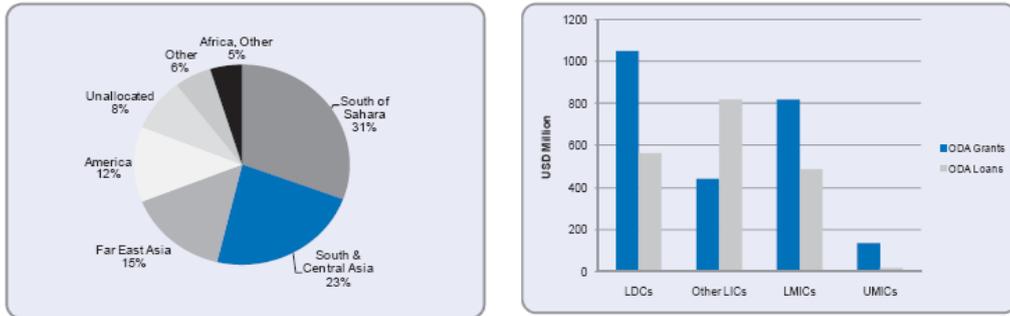
	Commitments, USD million			% of Donor Total			% All Donors		
	2002-03	2004-05	2006-07	2002-03	2004-05	2006-07	2002-03	2004-05	2006-07
Australia	114	84	82	10	7	5	2	2	1
Austria	7	9	12	2	4	4	0	0	0
Belgium	95	93	91	10	10	9	2	2	1
Canada	115	213	114	7	11	6	2	4	2
Denmark	67	204	83	8	13	9	1	4	1
Finland	22	48	34	6	11	8	0	1	1
France	255	184	451	7	4	9	5	4	7
Germany	239	229	317	5	5	5	5	5	5
Greece	2	1	5	1	1	3	0	0	0
Ireland	23	22	33	7	6	7	0	0	1
Italy	48	27	45	7	4	6	1	1	1
Japan	820	702	821	12	9	10	16	14	13
Luxembourg	4	11	9	3	8	6	0	0	0
Netherlands	226	148	121	10	6	3	4	3	2
New Zealand	5	9	11	5	6	5	0	0	0
Norway	83	115	117	6	8	6	2	2	2
Portugal	6	3	2	2	1	1	0	0	0
Spain	136	115	163	9	9	7	3	2	3
Sweden	44	79	144	3	5	8	1	2	2
Switzerland	85	70	69	13	9	9	2	1	1
United Kingdom	221	143	113	6	4	2	4	3	2
United States	337	669	932	3	4	5	7	13	15
Total DAC countries	2953	3179	3768	7	6	6	58	63	61
ArDF	306	207	245	23	16	15	6	4	4
AsDF	286	226	223	16	15	14	6	4	4
EC	471	288	444	7	3	4	9	6	7
FAO	219	213	203	100	100	100	4	4	3
IDA	725	718	1075	10	10	12	14	14	17
IDB Sp.Fund	48	42	0	8	10	0	1	1	0
IFAD	107	175	209	24	40	44	2	3	3
UNDP	0	7	1	-	2	0	0	0	0
Total Multilateral	2161	1875	2400	12	9	10	42	37	39
Total	5114	5054	6169	8	7	7	100	100	100

자료: OECD(2009).

농업원조의 60%는 양자원조를 통해서, 40%는 다자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다자원조의 대부분은 IDA, 지역개발은행의 기금, 그리고 IFAD, EU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DAC국가들은 무상원조 형식으로 농업분야 원조를 하지만(2002~2007년 기준, 82%), 일본은 지원액의 61%를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며 독일은 39%, 프랑스는 18%, 이탈리아는 17%, 스페인은 15%를 차관형식으로 제공한다.

2002~2007년에 농업에 대한 원조는 31%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23%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에 이루어졌으며, 최빈 개도국과 저소득국가에 전체 원조의 60% 이상이 지원되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는 지난 십년간 각각 27%에서 31%로, 19%에서 23%로 수원규모가 증가한 반면, 동아시아의 경우 22%에서 12%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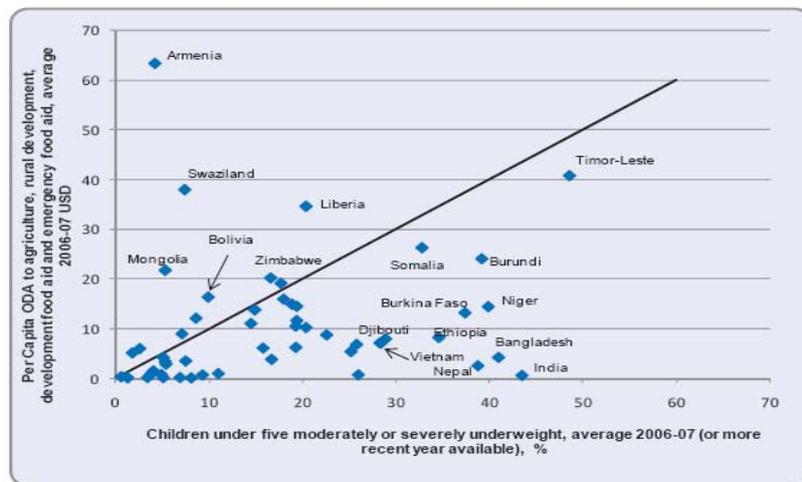
그림 4-3. 농업분야 원조 수혜의 지역별 및 소득수준별 분포



자료: OECD(2009).

<그림 4-4>는 5살 미만 어린이의 체중미달 비율과 인구당 농업원조 수혜액을 나타낸 것인데, 농업원조는 체중미달 비율과 거의 상관없이 보인다. 체중미달인 어린이의 비율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28%, 남아시아지역에서는 50%가 넘었지만, 남아시아의 경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비해 인구당 수원액이 크게 낮다. 티모르, 소말리아, 부룬디만이 인구당 20달러가 넘는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은 높은 저체중아 비율에도 불구하고 1인당 수원액은 많지 않다.

그림 4-4. 저체중아 비율과 1인당 농업원조 수원액의 관계



자료: OECD(2009).

농업분야 최대 수원국은 인도,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말리, 케냐, 에티오피아, 가나,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순이다. 1인당 수원액 기준으로 보면 아르메니아, 모리셔스, 말리, 스와질란드, 볼리비아, 가봉, 라오스,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부르키나파소 순이다.

농업분야 원조를 세부분야별로 보면 농업생산, 농업정책, 농업분야 교육 및 연구개발서비스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농업생산이 전체의 28%, 농업분야 교육 및 연구개발 서비스가 21%, 농업정책이 18%를 차지하였고, 이 외에 수자원관리가 13%, 임업이 12%, 어업이 6%를 차지하였으며, 농업기자재는 2%로 비중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국가별로 보면 일부 국가는 임업을 강조하였고(핀란드: 67%, 일본과 네덜란드: 36% 오스트레일리아: 24%), 또 다른 나라들은 어업을 중요시하였다(그리스: 38%, 스페인: 31%,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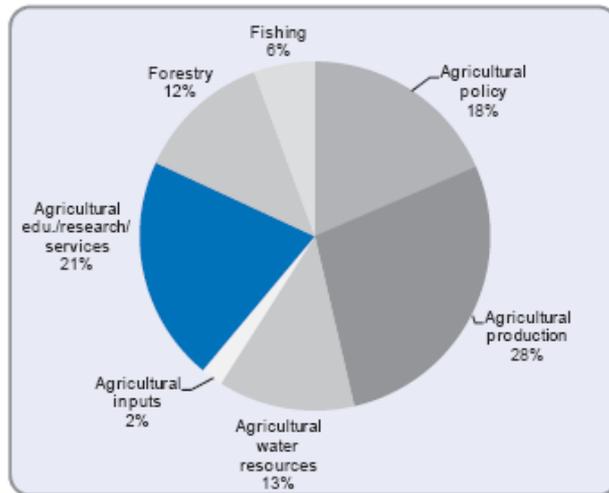
표 4-2. 농업분야 최대 수원국(2006~2007년 평균 기준)

	Total USD amount USD million	per capita USD		per capita USD	Total USD amount USD million
1 India	563	0.5	1 Armenia	29.4	88
2 Afghanistan	248	7.6	2 Mauritius	15.5	19
3 Viet Nam	236	2.8	3 Mali	13.8	186
4 Mali	186	13.8	4 Swaziland	12.4	14
5 Kenya	176	5.1	5 Bolivia	10.7	98
6 Ethiopia	166	2.1	6 Gabon	9.4	13
7 Ghana	163	7.0	7 Laos	7.8	46
8 China	155	0.1	8 Afghanistan	7.6	248
9 Indonesia	140	0.6	9 Timor-Leste	7.2	8
10 Pakistan	133	0.9	10 Burkina Faso	7.1	104
Other	4004		Other		5345
Total	6169		Total		6169

자료: OECD(2009).

농업원조는 62억 달러이지만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위한 지원까지 합하면 12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 중 76억 달러는 농업 및 농촌개발 등 장기적 사업에 투입되며 44억 달러는 식량원조와 긴급구호 등 단기적 목적에 사용된다.

그림 4-5. 농업원조의 분야별 비중(2006~2007년 평균 기준)



자료: OECD(2009).

1.2. 주요국의 중점 지원대상국

농업분야의 중점 지원대상국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국의 전체 원조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수원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같은 대테러전쟁 지역이거나, 아르메니아와 같은 전략적 요충국가, 가나와 말리의 아프리카,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등의 남미 국가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인도, 중국 등 아시아 거대신흥시장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아시아국가에 집중하고 있으며, 튀니지, 이집트 등 중동국가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아프리카 국가에 대부분의 농업 원조를 집중하고 있다. 스페인은 과거 자국의 식민지 지역인 중남미 국가에 농업원조를 집중하였다.

이는 농업분야 원조에 있어 수원국을 선정할 때 수원국의 특성이나 수요를 반영하기보다는 공여국의 목적이나 전략을 반영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즉 수원국 선정에 있어 통일된 기준이나 공통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4-3>과 <표 4-4>를 비교해 보면 주요 공여국의 농업부문 10대 수원국과 전체 원조 10대 수원국이 크게 겹침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10개국 중 4~6개국이 겹치는데(색깔이 칠해진 국가가 겹치는 국가를 의미함), 이는 전체 원조의 틀 내에서 농업부문 원조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요 수원국이 공여국별로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농업부문 상위 3개 수원국이 공여국별로 완전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식량부족이나 빈곤비율과 같은 수원국의 객관적 필요가 수원국 선정에 있어 공통적인 고려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3. 주요 공여국별 농업원조 10대 수원국(2006~2007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수원국	금액	수원국	금액	수원국	금액	수원국	금액	수원국	금액	수원국	금액
아프가니스탄	146.7	인도	284	캄보디아	9.3	베트남	58.7	아프가니스탄	29.1	니카라과	11.3
이라크	120.3	중국	107.7	가나	9	브라질	36.7	에티오피아	10.8	페루	7.8
가나	95.9	필리핀	56.8	아프가니스탄	7	부르키나파소	30	아이티	10.3	볼리비아	5.7
아르메니아	80.6	페루	31.8	카메룬	6.7	마다가스카르	29	세네갈	8.8	모로코	5.5
말리	80.3	베트남	29.5	모리셔스	6.5	가나	27.7	파키스탄	6.9	에콰도르	5.1
콜롬비아	60.3	인도네시아	23.6	잠비아	2.8	카메룬	26.1	방글라데시	6.3	가나	4.8
페루	45.5	튀니지	23.6	케냐	2.1	세네갈	24.9	우크라이나	4.1	카메룬	4.5
볼리비아	32.5	이집트	10.8	멕시코	2	말리	18.3	타지키스탄	3.1	쿠바	3.6
모잠비크	14.8	말라위	7.9	르완다	2	태국	14.9	가나	1.4	세네갈	3.5
파키스탄	12.2	볼리비아	7.6	DR콩고	0.9	인도네시아	13.5	스리랑카	1.2	도미니카공화국	3.3

자료: OECD(2009).

표 4-4. 주요 공여국별 전체 원조 10대 수원국(2006~2007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수원국	금액	수원국	금액	수원국	금액	수원국	금액	수원국	금액	수원국	금액
이라크	3,246	이라크	1402	인도	700	이라크	537	아프가니스탄	277	과테말라	254
아프가니스탄	1,816	중국	1196	이라크	350	카메룬	500	아이티	133	온두라스	186
수단	779	인도네시아	1191	아프가니스탄	296	마요트	445	에티오피아	122	니카라과	150
이집트	684	인도	949	나이지리아	275	모로코	369	이라크	93	페루	124
에티오피아	592	베트남	780	에티오피아	273	튀니지	240	인도네시아	81	모로코	124
콜롬비아	520	필리핀	599	방글라데시	249	중국	236	말리	78	중국	91
파키스탄	398	방글라데시	540	탄자니아	243	터키	235	수단	77	세네갈	90
케냐	383	탄자니아	396	파키스탄	229	콩고	216	가나	76	팔레스타인	88
팔레스타인	351	터키	354	수단	203	세네갈	211	방글라데시	71	볼리비아	87
우간다	327	스리랑카	288	중국	201	레바논	209	모잠비크	67	에콰도르	84

자료: OECD(2009).

2.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중점지원 대상국 선정

2.1. 선정방법론

2.1.1. 국가선정 시 고려 요소

선진 공여국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점지원 대상국 선정에 있어 객관적 기준이나 국제적인 원칙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농업분야 중점지원 대상국 선정 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수원국의 농업부문 수원 수요(needs): 낮은 소득이나 식량부족 등으로 인해 기아에 시달리거나 농업발전이 지체되어 이 분야 원조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나라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수원국의 농업부문 발전 가능성(capacity): 일회성 식량지원이 아니라 농업부문의 장기적 개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연환경 측면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농업부문의 발전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③ 우리나라와의 정치경제적 관계(relationship): 원조정책에는 공여국의 이해관계도 부분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나라와의 양자 간 관계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④ 전체 원조정책과의 일관성(consistency): 농업부문의 원조도 우리나라 전체 원조의 일부분이므로 전체 원조의 중점대상국과 가능한 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원칙은 최근 국제사회가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양적 지표를 발굴하고 이들을 가중평균함으로써 중점지원 대상국을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 의한 중점지원대상국 선정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정책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국과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는 점(특히 정치경제적 관계), 적절한

양적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도국의 통계부족으로 통계이용의 한계가 있다는 점, 각 요소별 가중치 부여에 자의성이 있다는 점 등이 방법론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점지원대상국이 공여국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런 양적 지표를 통한 중점지원 대상국 선정의 한계와 공여국 국가별 질적 평가의 중요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1.2. 요소별 지표의 발굴

각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면서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통계가 이용가능한 것을 지표(indicators)들로 선정한다. 각 요소별 지표는 <표 4-5>와 같다.

표 4-5. 농업분야 중점지원대상국가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 및 지표

요 소		지 표
수원 수요	일반수요	PPP기준 국민소득(-), 총수원액(+)
	농업부문	영양실조 비율(+), 식량수입 비중(+), 칼로리 결핍량(+), 농업생산성(-), 비료사용량(-)
발전가능성	일반 발전가능성	평균경제성장률(+), 반부패지수(+), 정부효율성지수(+)
	농업부문	곡물생산증가율(+), GDP 중 농업비중(+), 1인당 경작 면적(+), 단위면적당 생산량(-), 평균 강수량(+)
양자관계	잠재력	인구규모(+), 경제규모(+)
	현재관계	총수입액(+), 총수출액(+)
원조 일관성		무상원조 중점지원국 여부(+)

주: (+)는 지수가 높을수록 지원필요가 높고, (-)는 지수가 낮을수록 지원필요가 높음을 의미함.

국민소득이 낮으면 개발을 위해 원조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실제로 원조를 많이 받고 있으면 공여국들에 의해 원조필요성이 높은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물가수준과 시장환율의 요인을 제거하여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경상환율 국민소득 대신 PPP기준 국민소득을 사용한다. 식량 및 농업부문에서는 영양실조 인구비율과 칼로리 결핍량이 높으면 농업지원 필요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 수입 중 식량수입 비중이 높으면 농업개발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나라로 볼 수 있다. 토지가 있지만 경제력이 미약하여 비료사용량이 부족하거나 농업생산성이 낮은 나라는 지원을 통해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한데, 이런 제도나 환경이 미비한 경우 원조의 효과는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최근 국제사회는 이런 제도적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높으면 거시경제적 안정이나 정부효율성으로 잠재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부의 부패정도가 낮고 정부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농업부문의 발전가능성은 자연환경이나 농업이 갖고 있는 기타 잠재력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량부족은 심각하지만 경작면적이 원천적으로 부족하거나 강수량이 부족한 경우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지원의 효율성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도 지원 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인당 경작면적이 넓고 평균강수량도 풍부하면 농업을 위한 자연적 환경이 양호하여 농업발전의 잠재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단위 면적 생산량은 낮지만 최근 곡물생산 증가율이 높으면 이런 잠재력이 실현되기 시작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앞으로 생산성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국익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수원국의 인구규모나 경제규모 등 나라의 규모 자체가 크면 이 나라가 발전할 경우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와의 경제적 관계도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정치외교적 관계, 전략적 중요성, 농업분야의 특수한 양자관계 등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수량화하기 힘든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는 실제 지원국 선정시 질적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상국이 KOICA가 선정한 우리나라 전체 무상 원조의 중점지원대상국인 경우 농업분야의 원조에서도 중요한 지원대상국으로 고려되는 것이 우리나라 원조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바람직 할 것이다.

2.1.3. 지수화 방법

DAC의 ODA 대상국가로 분류되는 2008년 1인당 GNI가 1만 1,800달러 미만인 개발도상국 중 분석에 유의한 정도의 통계가 이용가능한 1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각 지표는 위 134개국에서 정규분포의 형태를 보인다고 가정하고, 국가별 지표의 표준정규 누적분포함수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0과 1사이의 값으로 지수화하였다. KOICA의 무상원조의 중점지원국 지표의 경우, 19개 중점협력국에는 1의 값을, 37개 일반협력국에는 0.5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나머지 국가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각 요소의 가중치는 수원수요 30%, 발전가능성 30%, 양자관계 30%, 원조일관성 10%로 부여했는데, 원조일관성의 가중치를 낮게 부여한 것은 이 요소에 포함된 지표의 수가 1개에 불과하고 농업부문의 특성을 가급적 많이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이를 ‘가중치1’로 명명). 4개의 요소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했을 경우도 계산했는데, 이 경우 무상원조 중점지원국의 여부가 농업분야 중점지원국 선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이를 ‘가중치2’로 명명). 세부요소의 가중치는 <표 4-6>과 같은데, 세부요소의 가중치는 각 요소를 1로 한 가중치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일반수원수요는 수원수요에서 1/3의 가중치를 가지므로, 전체 지표에서는 10%의 가치를 가짐). 수원수요와 발전가능성의 세부요소 가중치에서 일반적 요인의 가중치를 1/3로 하고 농업부문 요인의 가중치를 2/3로 한 것은 농업부문의 특수성을 비교적 많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세부요소에 포함된 개별지표들은 모두 단순평균하는 방식으로 세부요소의 지수를 계산하였으므로, 세부요소 내 개별지표에는 모두 동일한 가중치가 부여된 것이다.

표 4-6. 요소 및 세부요소별 가중치

요소	가중치1	가중치2	세부요소	가중치 (각 요소=1)
수원 수요	30%	25%	일반수요	1/3
			농업부문	2/3
발전가능성	30%	25%	일반 발전가능성	1/3
			농업부문	2/3
양자관계	30%	25%	잠재력	1/2
			현재관계	1/2
원조 일관성	10%	25%		

2.2. 선정결과

선정결과는 <표 4-7>과 같으며 134개국의 전체 순위는 <부표 5>에 나타나 있다.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중국, 방글라데시, 탄자니아가 1~5위의 중점지원대상국인 것으로 분석되고(‘가중치1’ 기준, 이하 동일), 인도, 베트남,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필리핀도 6~10위의 중점지원대상국인 것으로 분석된다. 20위권 내 국가의 대륙별 분포를 보면 9개 국가가 아시아 국가이며, 11개 국가가 아프리카 국가이다. 20개 국가 중 11개국은 KOICA 무상원조 중점협력국이고, 6개국은 KOICA 무상원조 일반협력국이며, 나머지 3개국(르완다, 모잠비크, 인도)은 KOICA 주요 협력대상국이 아니다.

원조일관성을 강조할 경우(‘가중치2’의 경우), 인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가

20위권에서 제외되고, 대신 아시아의 스리랑카, 남미의 과테말라, 페루, 파라과이, CIS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이 포함된다.

표 4-7. 농업분야 중점지원대상국 선정결과

	수원수요 순위	발전가능성 순위	양자관계 순위	순위 (가중치1)	순위 (가중치2)
Ethiopia	1	7	26	1	1
Indonesia	48	61	3	2	2
China	67	86	1	3	14
Bangladesh	3	93	17	4	3
Tanzania	4	31	35	5	4
India	29	39	2	6	31
Vietnam	41	55	11	7	5
Nigeria	42	35	14	8	6
Cambodia	35	5	55	9	7
Philippines	71	53	10	10	8
Senegal	15	76	66	11	9
Mongolia	40	23	84	12	10
Zambia	12	21	60	13	21
Ghana	34	4	47	14	22
Lao PDR	49	37	81	15	11
Madagascar	19	26	57	16	23
Congo, DR.	5	91	30	17	24
Mozambique	2	9	50	18	46
Rwanda	8	3	78	19	47
Sudan	25	42	32	20	25
Pakistan	22	109	13	21	26
Sri Lanka	47	82	39	22	12
Nicaragua	24	32	74	23	27
Myanmar	37	17	31	24	28
Sierra Leone	23	2	97	25	52
Guatemala	68	50	42	26	13

표 4-7. 농업분야 중점지원대상국 선정결과(계속)

	수원수요 순위	발전가능성 순위	양자관계 순위	순위 (가중치1)	순위 (가중치2)
Kenya	20	77	37	27	29
Peru	84	62	23	28	15
Angola	38	38	34	29	30
Paraguay	91	28	73	30	16
Morocco	51	30	27	31	32
Cameroon	33	52	46	32	33
Kazakhstan	109	18	38	33	17
Afghanistan	54	16	49	34	34
Liberia	10	34	33	35	58
Malawi	14	19	65	36	59
Egypt	66	125	15	37	18
Bolivia	39	60	61	38	35
Honduras	62	25	68	39	36
Yemen, Rep.	11	119	44	40	37
Niger	6	56	69	41	61
Uzbekistan	74	105	29	42	19
Brazil	118	22	4	43	62
Nepal	53	66	45	44	38
Uganda	26	44	41	45	63
Mali	36	14	72	46	64
Bhutan	87	1	117	47	65
Zimbabwe	16	126	67	48	39
Cote d'Ivoire	31	115	51	49	40
Iraq	69	133	22	50	20

제 5 장

국제협력사업 추진 방식의 체계화 방안: KSP 사례

1. 서론: 프로젝트 디자인 시 중요사항

국제농업협력사업¹은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개발경험을 개도국 또는 협력국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그 활동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조사, 조사결과의 분석, 대안의 제시 또는 그 대안의 구현을 위한 기관형성과 능력개발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협력사업은 주로 기술협력과 자원협력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사업을 디자인할 때 고려하여야 할 핵심 축(pillars)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①협력수요, ②지식이나 기술, ③지식과 기술의 전달자, ④사업기획, ⑤사업비이다. 여기서 사업비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우선은 협력 수요가 존재해야 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상국을 선정할 것인가, 어떤 대상 부처에 중점을 둘 것인가, 고위공직자

¹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국가에 속하는 기관들이 일방 또는 쌍방이 의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물질, 지적, 인적 교류를 포함한 일련의 협동행위로 보고 있다. 그 목적은 반드시 현재 문제의 해결이나 현 상태의 개선을 추구하되,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속성을 가져야 한다.

또는 중견관리자 중 어느 쪽의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의견의 수집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결과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분류, 분석하고 사업을 선정할 것인가 등을 고민하여야 한다.

둘째, 제시된 협력수요를 충족시킬 콘텐츠, 즉 지식이나 기술이다. 사업수행 기관은 대상국으로부터 제시된 협력수요를 해결하거나 문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또는 방안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최적대안부터 수 개의 차선의 대안까지도 포함하여 사전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시된 수요의 충족이 불가능하다면 협의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사업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셋째, 제시된 수요를 충족시킬 지식과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지식과 유용한 경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협력대상국에 전달하여 사업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사업 목적의 성취는 원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전문가도 다수의 대안을 가지고 충원하되,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공, 경험 등도 중요하지만 제시된 과제에 대해서 해당국가, 또는 해당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넷째, 사업 기획 및 관리다. 사실상 사업의 성공은 정확한 사업기획을 기초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에 의해 결정된다. 사업관리는 사업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하는 행위로서 사업 전체가 기획된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조작하고 자극하는 구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관리자는 과제, 지역 및 사업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이어야 한다. 국제협력사업에서 가장 많은 오해 중의 하나가 사업관리자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특히 영어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거나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사업관리자들의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서면, 또는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에 걸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드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전이(project transfer)관리가 이루어진다. 효율적 사업관리는 사실상 사업관리자의 능력에 달려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농촌 및 농업개발 경험 공유를 위한 사업의 유형, 발굴방식, 그리고 추진 절차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기획재정부의 지원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하는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의 사례도 소개한다.

2. 사업종류의 체계화

2.1. 사업별 정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은 크게 ①일반사업, ②기획사업, ③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 ④자문관 파견사업, ⑤중장기 연수사업 등이다. 여기서는 KSP의 유형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2.1.1. 일반사업

일반사업은 민간부문이 진행 중이거나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실용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민간이 제안하고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민간부문 스스로 사업개발과 집행에 대한 주인의식(ownership)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향후 증대될 ODA 사업의 규모와 사업성과(효과성)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이 전략적인 사고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개발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제안하거나 ‘First-Come First-Serve’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중장기

적인 시각에서 개도국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도 일회성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민간부문은 사업개발역량 자체가 부족함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² 사업수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KSP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민간부문이 제안한 것도 공식적인 사업수요조사 과정에 넣어 재검증을 거쳐서 사업으로 확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민간부문이 집행할 수 있도록,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개발된 다른 사업들과 함께 민간 위탁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농업협력에서는 필요하다면 사업관리주체가 사업을 개발해서 민간부문에 집행을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1.2. 기획사업

기획 사업은 우리의 농업 및 농촌 개발 분야의 프로젝트형 협력 사업으로, 농업·농촌 개발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대륙별 거점국가를 선정하고 그 국가를 대상으로 인적·물적 협력수단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패키지형 사업이다. 예를 들면, 시범농장을 구축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농자재를 보급하고 나아가 사업성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또는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획사업은 한국형 개발경험을 전수하여 중장기적 맥락에서 개도국의 농업분야 발전역량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개도국들의 빈곤퇴치와 MDGs 달성에 기여할 기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이다. 한국 개발경험 중에서 새마을운동을 전수하는 것과 같은 사업은 사업대상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시킬 수만 있다면 종합적인 농촌개발 프로그램으로 만들기에 적절한 사업유형이다. 말하

² KSP에서는 외주위탁 사업운영에서 핵심활동, 수요조사 겸 세부실태조사,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워크숍,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3개는 반드시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자면, 소득증대(income-generation), 지역균형개발(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주민자치(participation-oriented local governance)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공동체 역량제고 프로그램(Comprehensive Community Empowerment Program)을 개발하기에 적절한 사업 유형이다.

이러한 패키지형 사업은 많은 협력수단이 동원되기 때문에 수단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기획하고 운영하지 못한다면 협력수단이 단순히 나열되거나 집합된 사업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즉, 시간과 자금이 많이 소요될 뿐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사업목표와 목표 집단에 대한 전략적 초점화(focusing)의 결여로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진행되어 연계성 없이 산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종합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사업관리를 강화하며, 단계별 목표와 사업수단을 정밀하게 연결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전이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기획사업과 유사한 KSP의 집중지원사업³도 대규모의 종합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운영의 산만함을 제어하고 초점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라미드형 사업관리 구조, 즉 사업전체를 책임지는 총괄PM, 분야별 연구와 활동을 맡은 섹터PM 및 그 분야의 참여연구진(컨설턴트)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를 띠고 있다.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과 진행은 KSP 사업 책임자가 지고, 단계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PM들에게 통보하여 반영토록 한다. 반영이 어려울 경우는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³ KSP 집중지원사업은 기획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포괄적인 정책자문 및 능력제고 사업으로 2+1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수요자중심 사업기획을 기초로 현지조사·공동연구·정책제안·자문·교육활동과 제안된 성과를 고양하기 위한 후속사업을 포함한 풀 서비스로 제공되는 개발협력사업임.

2.1.3.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은 국제개발은행(Multi-Development Banks, MDBs), FAO 등과 같은 국제기구 및 ODA 공여국을 포함한 제3국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발굴·수행·평가하는 협력 사업이다.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식량안보, 녹색성장, 환경보호 등과 같은 글로벌 어젠다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고,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들의 협력사업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으며,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기구 주관의 국제협력사업 경험을 축적하여 사업시장)에 진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가 공동 재정부담(co-financing)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공동사업을 개발할 수 있고, 한국의 비교우위분야는 우리 전문가가, 나머지는 파트너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의 추진에는 어려운 과제도 있다. 우선, 국제기구의 우수한 전문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부족하여 적절한 전문가를 발굴하기 어렵다. 더구나 국제전문가들과 함께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전문가가 있더라도 그들에게 제공되는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국제사회의 것과는 차이가 커서 인력활용에 한계가 있다. 국제기구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TA) 사업 대부분이 중장기 해외근무, 또는 생활여건이 열악한 오지에서의 근무가 가능한 풀타임 전문가를 희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실제로 많지 않다. 또한 참여기관들이 사전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합의(가령 MOU 체결과 같은 방식)를 도출하여 사업구조를 확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KSP에서는 한국의 개발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고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IBRD, ADB, IDB, EBRD와 같은 국제개발은행, OECD, UNDP 등과 같은 국제기구, SICA(중미 8개국연합체), ASEAN 등과 같은 지역공동체들과의 공동연구 및 컨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합의서(MOU)를 체결하고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는 공동사업이기 보다는 사업에서 일정부분을 분리해서 한국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동 작업을 통해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주로 한국 전문가는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또는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 자문을 진행하도록 하고, 우리 정부가 국제개발은행(MDBs)에 출연한 신탁기금도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도 MDBs의 현지사무소장 등이 수요조사 때에는 담당국가의 경제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제공하고, 최종 보고회에서는 우리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KSP 사업의 현지 국제기구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공동 재정부담(co-financing)은 협의해서 경비를 분담하는 형식이며, 사례마다 분담내용이 다르고 운용방식도 다르다.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은 경비분담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구분의 실익은 크지 않다. 기존사업의 한 부분을 맡든 또는 전문가로 참여하든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1.4. 자문관 파견사업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농촌 및 농업분야에서의 다양한 발전 경험과 혁신적인 농업기술을 축적하였고, 이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를 개도국에 파견하여 우리의 발전경험과 농업기술을 자문을 통해 전수하는 자문관 파견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업기술을 이전함으로써 개도국의 농촌과 농업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빈곤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농업분야에서의 인적 관계의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다.

자문관 파견사업 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3~6개월이란 기간에 개도국에 농업기술이나 경험을 전수하여 성과를 산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협력사업과 연계 없이 진행된다면 기존에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는 전문가 파견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복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협력사업과의 유기적 연계, 즉 사업 발굴의 초기과정에서 시행하거나 사업결과를 심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농촌 및 농업분야의 정책개발, 관리기법의 전수 등과 같이 관리측면의 경험 전수는 제시

된 기간 내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육종, 기술개발 등은 보다 장기적인 맥락에서 중첩적으로 자문이 수행되어야 효과를 낼 것이다.

KSP에서는 전문가 파견은 정책연구와 정책자문의 결과를 지원 또는 성과를 심화시키는 활동의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정책연구나 분석을 위한 세부 조사와 자문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능력개발(*institution-building & capacity development*)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 경제예측 모델의 전수를 위해 정책연구와 자문, 연수 워크숍을 서울에서 실시하고 2~3개월 후에 베트남에서 실습을 실시한다. 이때 관련 전문가를 2개월 정도 파견하여 실무자들이 예측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경제 운영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는 방식이다.

2.1.5. 중장기 연수사업

중장기연수사업은 농업정책의 개발을 위한 관측, 통계, 농축산물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 농업정책 개발과 실물운영과 관련된 정책 또는 관리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농업정책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되는 능력제고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주로 집합교육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홍보 또는 일반적인 지식의 전달과 교육에 효과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역량을 제고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능력개발프로그램이다.

우선, 이런 연수사업은 협력수단의 하나를 특화된 또는 확대된 형태로 운영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다른 협력사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사업의 성과를 산출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또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연수는 반드시 이론+실습+적용+평가과정으로 구성되고, 이런 과정이 시공(時空)을 달리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셋째, 많은 개도국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쉬지 않아서 연수 수요를 정확히 인지하여 커리큘럼의 구성에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중장기 연수 이후 개도국과 우리와의 여건차이로 실제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자재 지원과 프로젝트

트형 사업과 연계되거나 병행되지 않는다면 연수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KSP 연수사업은 상술한 측면을 고려하여 컨설팅사업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로서 정책실무자워크숍(policy practitioner workshop)이나 집중지원사업의 2~3차 연도에 특화된 능력제고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전문가 파견의 내용과 동일하며, 그 내용은 컨설팅사업의 결과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사업의 중요한 실행수단이다. 연수활동은 정규 컨설팅사업이나 집중지원사업의 후속프로그램으로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자체 연수 효과의 제고는 물론이고 컨설팅사업의 성과를 강화하고 그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2. 사업유형의 조정과 개발

상기 사업들을 KSP의 유형과 비교하면, 일반사업은 KSP의 정규 또는 후속사업, 기획 사업은 KSP의 집중지원사업,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은 KSP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과 유사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장기 전문가 파견 및 연수사업은 하나의 기능에 중점을 둔 활동으로 KSP에서는 국별 자문사업 활동의 하나로 흡수·통합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2.2.1. 일반사업의 점진적 축소 및 폐지 여부

우리나라가 OCED-DAC에 가입함에 따라 ODA가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ODA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기대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민간전문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도 민간부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공부문(정부출연연구소)에서 민간연구소 또는 NGO기관 등에 컨설팅과제를 위탁 운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보더라도 일반사업의 점진적인 축소보다는 민간부분의 창의성과 실용성을 활용하고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제한적이지만 전략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민간컨설팅기관들의 전문화를 지원하되,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 활동은 개도국에 실질적인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분석, 기술전수 및 정책자문이 포함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보다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의한 사업 발굴과 수행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 경우에 민간부분이 현지에서의 작물재배, 가공처리, 오일생산 등을 동시에 수행하고 우리기업의 현지진출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일반사업을 폐지할 경우는 현재의 일반사업이 민간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용하는 방안임을 고려하여 기획 사업이나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에 연계시키고 일반사업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한다면 커다란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주요 ODA 관련기관들이 민간부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민간기관의 의지와 창의성을 고양하려면 민간컨설팅기관들이 수행할 정책연구나 정책자문과 같은 사업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주도보다는 농경연 주도의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것처럼 일반사업의 내용과 사업운영주기를 보완하여 운영한 후에 2~3년 동안 수행한 사업의 결과와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개편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2. 기획사업과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의 관계 설정

상술한 것처럼 기획사업과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의 구성은 유사하나 거버넌스와 오너십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활동의 구성면에서 보면 다른 국제협력사업처럼 수요조사, 사업기획, 분석과 자문, 연수와 훈련을 포함하는 활동

으로 구성되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참여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서 사업 활동을 공동으로 또는 협력해서 운영하고 집행하며 그 책임의 범위도 합의에 따라 다르고 경비분담도 달라진다.

사실상 두 개 사업은 운영과정에서 업무, 경비 및 책임의 분담상의 차이점은 있지만 구성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예를 들면, 기획사업의 경우에 국제사회가 비교우위를 가진 부문에 대해서 ODA 선진국기관이나 국제기구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다. 두 개의 구분에는 커다란 실익이 없으나 사업관리나 운영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개의 사업유형으로 볼 수 있다.

2.2.3. 자문단 파견사업 및 중장기 연수사업의 신규 개설 여부

농업농촌발전 경험이전 자문단 파견이나 개도국 중장기 연수는 상술한 협력사업 유형들의 협력활동 중의 하나로, 구체적인 수요가 있고 성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면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자문단 파견이나 중장기연수는 기획사업 등과의 긴밀한 연계로 추진하되, 사업성과를 심화 또는 제고하기 위한 기획사업 등의 후속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KSP사업에서는 집중지원사업, 신규사업, 후속사업의 주요활동으로 단기연수(Policy Practitioner Workshop) 또는 특별과제에 대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고 전문가 파견은 집중지원 사업국을 대상으로 연간 3~4개월 정도 총괄 PM을 파견하여 연구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자문결과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KSP사업의 집중지원사업은 2+1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사업추진 1차연도와 2차연도에는 사업과제 관련 연구와 자문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심화하기 위해 역량제고 프로그램을 2차연도 부터 제공하고 전문가파견(총괄PM)은 수원국과 협의하여 2차연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문관 파견이나 중장기 연수는 그 자체로 효과가 있으나 KOICA 등

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생 초청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독립된 사업의 하나로 개설한다면 대상국, 대상자, 내용 등에서 기존의 것과 차별화되고 그 결과를 타 사업과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다면 성과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은 우선 기획사업의 수요발굴에 반영하거나 연계하고, 기획사업 또는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 활동 또는 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연계 추진을 통해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별 추진방식

기획사업과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은 수요조사부터 평가까지 전형적인 국제협력사업의 형태와 과정을 취하고 있고, 일반사업도 민간의 사업개발을 기초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요조사와 사업수행기관 선정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점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파견이나 중장기 연수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만, 그 과정이 공개적으로 중요시되지 않거나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간과 또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전문가 파견의 경우, 대상국, 목표 집단, 또는 자문자료 준비 등과 같은 사전연구(background study)는 전문가 스스로 준비해야 하거나 또는 당연히 갖추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식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다.

여기서는 우리 농촌 및 농업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전형적인 국제협력사업인 기획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발굴 방식과 관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사업발굴 방식: 사업수요 파악

사업 발굴은 사실상 수요조사부터 시작되며 수요분석(need assessment)의 결과에 따라 사업형태는 다를 수 있다. 수요조사 결과가 단순한 한국의 농촌 개발경험 전수라고 한다면 연수프로그램으로 가능하고 농촌의 소득증대라면 기획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사업유형의 재정의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사업수요를 발굴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KSP사업의 것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일반사업으로 사업발굴의 핵심은 대상국의 수요 파악이며 이는 크게 여섯 가지 방법 또는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3.1.1. 서면수요조사

서면수요조사는 대상국에 질문서를 보내 조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요파악 방법으로 서면수요조사 후보대상국을 선정하여 현지방문 수요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상국들이 원하는 주제, 배경, KSP의 기대효과, 주요 활동, 연락담당 기관 및 담당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교채널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여 사업수요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정은 ①설문지를 작성하고, ②기획재정부는 외교부에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협조를 요청하고, ③대상국주재 한국대사관에서는 설문지 작성을 대상국 관계부처장에게 요청하고, ④대상국 정부협력부처장은 사업희망부서의 수요를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한국대사관에 제출하고, ⑤한국대사관은 수요조사 설문지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하고, ⑥KDI에서는 회수된 사업수요조사서를 분석 및 정리한다.

서면 수요조사 기간은 3~4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개시 전년도에 주로 실시한다. 접수된 수요조사 질문서는 향후 인터뷰, 면접 또는 방문 조사 시 중요한 자료가 되고 민간기관에 자문사업 위탁 시 제안서 작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3.1.2. 정부약속과제

정부약속과제는 정부 고위인사(VIP, 총리, 장관 등)의 해외순방 시, 정부 간 협력차원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사업 발굴시 중요한 사업수요로 간주하는 것이다. ①구체적인 자문과제를 제시한 경우에는 KSP사업의 과제로 편입하여 고위인사 방문 수요조사부터 진행하고, ②구체적 과제를 제시하지 않고 KSP사업을 하겠다는 막연한 약속의 경우에는 서면수요조사의 대상으로 편입하여 서면조사를 통해서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실시한다.

3.1.3. 대상국 정부 요청과제

대상국의 고위인사가 KSP사업을 요청할 경우에 기재부와 협의하여 사업대상국으로 선정한 후에 ①제시된 구체적 과제를 사업과제로 바로 편입하여 고위인사 방문 수요조사부터 실시하되, ②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수요조사 대상국으로 편입시켜 서면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3.1.4. 국제기구 요청과제

MDB 또는 UN기구 등에서 사업제안서를 송부하여 KSP사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제안이 올 경우에는 ①내부검토를 거쳐서(한국개발경험의 공유가능성, 국내전문기관/해당전문가의 동원가능성, 가용재원, 대상국 선정기준과의 일치여부 등), ②기재부와 협의하여 대상국을 선정 후, 과제에 내부적으로 편입하고 ③co-financing 등 경비분담방안, 전문가 투입, 사업수행계획 등을 검토하여, ④기재부 또는 KDI와 요청 국제기구 간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LOI (Letter of Intention) 등을 체결하고, ⑤공동으로 방문 사업수요조사 또는 세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3.1.5. 연구진 제안과제(후속사업)

종결된 사업의 연구·자문결과를 심화 또는 지속시키기 위한 후속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국별 정책자문팀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수원국이 요청하는 경우에 후속사업의 형태로 진행한다.

그 과정으로는 ①KDI는 대상국 관계자에게 사업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②수원국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③제출된 과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전 사업과의 연속선상에서 사업결과의 심화, 강화를 위한 경우에는 세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④만약 전년도 사업과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고위인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KSP 정규사업의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3.1.6. 고위인사 방문 수요조사

고위인사 방문 수요조사는 고위인사(전 장·차관급)를 단장으로 대상국을 방문하여 정부 또는 관련기관의 의사결정자(장관급)를 면담하고 우선순위와 관심도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절차다. 사업의 확정하기 전에 실시하는 최종적인 수요조사 활동의 하나다.

본 방문조사는 정부, 대상국, 국제기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된 정책자문수요에 대한 정책우선순위, 의사결정자의 관심도, 대상국 경제현황 등을 파악하고 현지방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업형태의 구체화는 물론이고 사업과제의 세부화, 연구진의 충원 등이 이루어진다. 본 조사는 수요조사의 핵심 부문이며 최종적으로 수요조사를 확인하는 단계다.

결론적으로 상술한 6가지 채널은 정리하면,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통해 사업수요조사를 파악하고 추진하지만 가장 중요한 절차는 서면수요조사와 고위인사 방문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방향, 내용, 연구진 등을 구성하게 된다. 정부, 국제기구, 대상국정부 및 연구진의 제안과제가 명확한 경우에는 바로 고위

인사 방문조사의 과제로 편입한 뒤에 사업계획 수립 후, 세부실태조사로 바로 진행된다. 정부, 국제기구, 대상국정부 및 연구진의 제안과제가 명확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수요조사의 대상으로 편입시켜서 서면수요조사를 진행 후, 고위 인사 수요조사 또는 사업시행업체를 선정 추진 등을 사업진행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3.2. 사업형태의 결정

고위인사 방문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국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기대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된다. 설문지상에 명기된 정책연구, 정책자문, 능력개발 등의 협력수단을 기초로 KSP의 사업 유형이 결정된다. 기재부와 KDI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부분 세 개의 협력수단이 언급된 경우는 KSP 정규 또는 집중지원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후속사업의 경우는 3개 중의 하나 또는 두 개의 협력수단으로 구성된다. 주로 후속사업은 심화연구와 법률 구조(legal framework), 제도 수립(institution-building)을 포함한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어 진행된다.

3.3. KSP 사례: 사업관리과정 및 매뉴얼화

3.3.1. KSP 사업관리과정

가. KSP사업의 일반적 추진 절차

KSP 사업 추진 절차는 사업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그림 5-1>에 요약되어 있다. KSP 사업유형에 따라 주요 활동이 생략되거나 추가되거나 일부는 강화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집중지원사업의 경우, 2차연도 사업으로 능력제고

워크숍을 한국과 현지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능력향상을 체크하기 위하여 워크숍이 추가된다.

KSP사업의 추진 절차는 일반적으로 4개 단계로 구분되며 사업주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사업주기는 사업기획, 정책연구, 정책자문 및 사업평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사업기획단계로 중장기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사업총괄기관과의 용역계약, 대상국 선정, 수요조사, 연구진 선정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활동을 기획하는 단계로 사업의 전반적인 형태와 내용, 추진방향이 결정되는 단계다.

둘째, 주어진 과제에 대한 자료 수집, 분석 및 대안을 탐색하며 현지 및 중간 보고회를 통해 정책제안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연구단계다. 한국 및 대상국 연구진이 공동 협력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고위관료나 현지 전문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정책제안을 수정하는 과정이다.

셋째, 정책자문단계로 대상국의 관련 중·고위 관료를 초청하여 사업결과를 공유하고 한국의 실제집행과정을 견학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정책실무자워크숍, 사업결과를 대상국의 과제 관련 장관에게 보고하고 토론하는 고위정책대화 및 사업결과를 local stakeholder들과 공유하는 공개세미나로 구성된다.

넷째, 사업평가단계로 사업결과를 국내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들과 공유하는 국내전파세미나, 보고서의 제출 및 사후평가로 구성된다. 사후 평가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림 5-1. KSP사업 진행 단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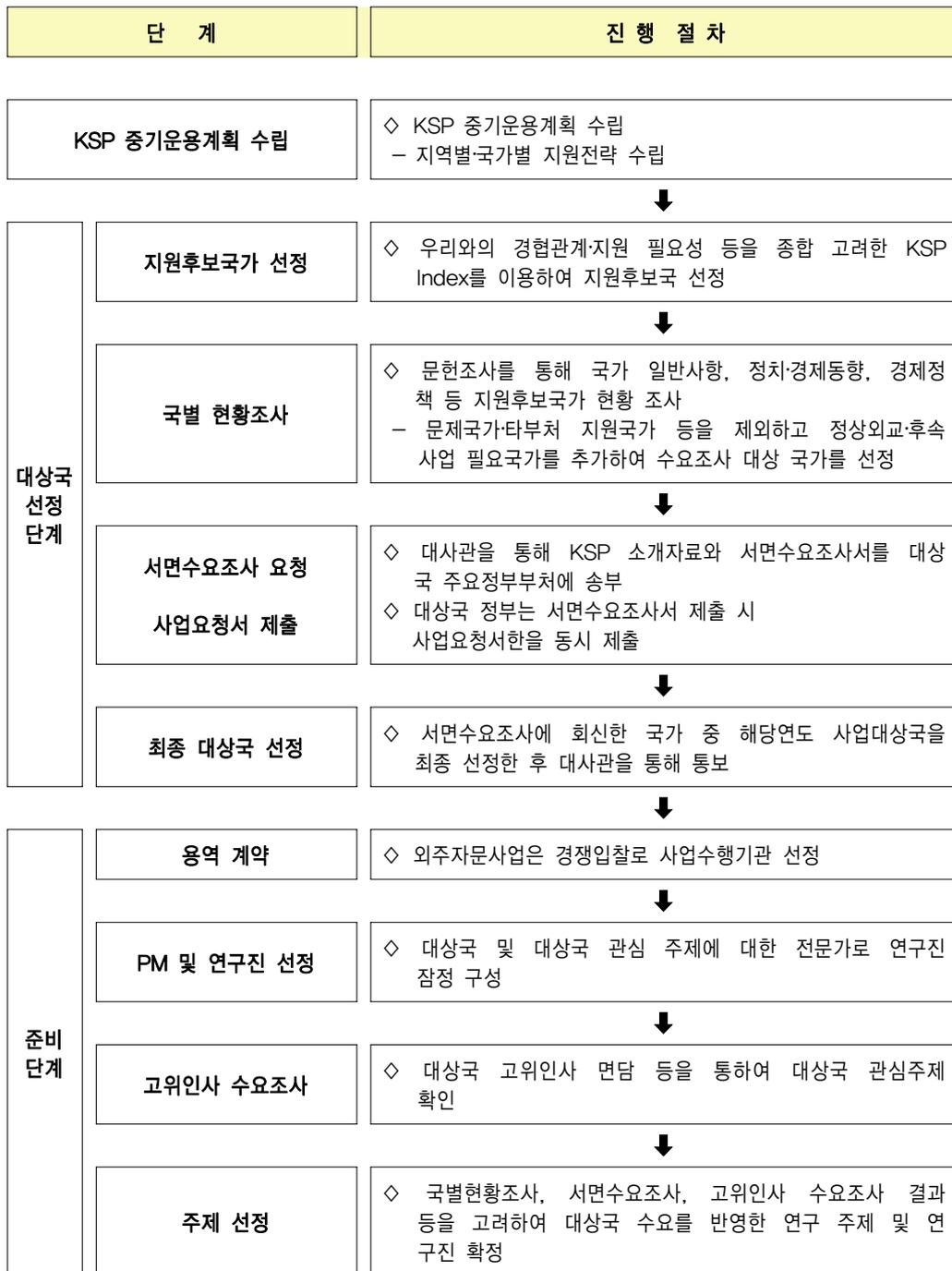


그림 5-1. KSP사업 진행 단계 흐름도(계속)

단 계		진 행 절 차
연구 수행 단계	세부 실태조사	◇ 대상국의 일반 경제현황 및 세부주제별 연구자료, 주요 이슈, 주변 정책과의 연계성, 사업의 파급효과,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고 현지 전문가를 확정
	MOU 체결	◇ 사업개요, 목적 설명, 양국 기관의 역할 분담, 재정 부담 사항 등 양국간에 양해된 사항을 확인
	현지 보고회	◇ 세부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및 현지 연구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 중인 연구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현지의 피드백을 받아 내용을 1차적으로 보완
	중간보고회	◇ 현지 고위 정책결정자와 동 사업의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현지 연구진 및 실무자를 서울로 초청하여 세부실태조사 및 현지 보고회를 통해 작성·수정된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토론
정책 자문 단계	정책실무자 연수	◇ 대상국 공무원이 연구주제와 관련된 국내 주요 정부부처·연구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관련 주제의 구체화된 실물 경험을 공유
	정책대화	◇ 한국의 고위인사를 단장으로 한 사절단이 대상국을 방문하여, 현지 고위인사(정책결정자, 장·차관급)를 만나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정책자문
	최종보고회	◇ 현지에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대상국의 정부관리, 국제기구, NGO, 연구소, 일반 기업체, 언론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전파
정리 평가 단계	국내 전파 세미나	◇ 국내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에게 국별로 진행된 KSP 사업을 홍보하고, 대상국과의 사업결과를 공유
	응역 보고서 제출 및 최종 보고서 송부	◇ 수행기관은 검토후, 재정부에 연구응역 보고서를 제출하고 대상국에 최종보고서 및 정책권고서를 송부
	사후평가	◇ 최종 보고서 제출 후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성과 및 개선 사항 평가 실시

나. 사업유형별 추진 절차

우선 집중지원사업은 제시된 주제가 포괄적이고 대상국의 관심도가 높고 사업결과의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사업내용으로 정규사업의 3~4배 규모의 국내 연구진 및 현지 컨설턴트가 투입되며, 예산규모도 상당히 크다. 주요활동은 고위정책세미나, 세부실태조사, 정책연구(현지, 중간), 정책실무자워크숍, 고위정책대화, 현지전파세미나, 국내 전파세미나로 구성된다.

정규사업은 제시된 주제가 3개 정도의 세부과제이고 처음으로 KSP 사업대상국이 된 경우로 집중지원사업의 활동 중에서 정책세미나 또는 현지전파세미나가 생략되고 나머지 활동의 규모도 축소되어 진행된다.

후속사업은 과제와 사업 활동의 범위도 종료된 사업성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사업이므로 규모가 더욱 축소되고 주요활동은 정규사업과 동일하나 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중점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3.2. KSP사업의 메뉴얼화

KSP사업 메뉴얼의 목적은 주요한 사업 활동의 개념, 내용, 책임, 추진과정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메뉴얼은 사업관리자 또는 연구진들의 참여경험을 통해서 매년 수정·보완되고 있다.

3.3.3. 외주위탁사업 관리

KSP 사업은 2010년부터 민간컨설팅기관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교적 정형화된 국별 컨설팅 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지역별 특성성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나누어 KSP사업을 수행해왔으나 사업관리의 효율화와 표준화를 위해 통합하였다.

우선 선정기준을 보면 ①KSP사업에 대한 이해, ②경제·사회개발에 대한 지

식, ③정책자문과제에 대한 이해, ④국별 정책 우선순위의 파악·분석 및 세부 주제 분류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안서의 평가기준은 <표 5-1>과 같다.

평가자는 사업관리자, 지역 또는 국별 전문가, 정책과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점수의 최고 및 최하점을 제외한 점수의 합계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최종 사업시행기관을 선정한다. 이러한 협상을 통해 제안서상 미진한 부문은 사업시행 대상기관에 요청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절차가 협상이다.

표 5-1. 제안서 평가기준

작성항목	배점
	계
<기술능력평가>	(95)
I. 기술·지식능력	(30)
1. 경제발전 공유사업의 이해	5
2. 경제·사회개발에 대한 지식	5
3.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	15
4. 국별 정책 우선순위의 파악·분석 및 세부주제 분류능력	5
II. 제안업체 일반	(5)
1. 자기자본비율	3
2. 유동비율	2
III. 유사용역수행실적	(10)
IV. 사업수행계획	(50)
1. 사업추진체계	5
2. 사업추진방식	5
3. 구체적 사업수행계획	20
4. 인력 투입 및 운용계획	20
<입찰가격평가>	(5)

3.3.4. 사업비 관리

사업비는 기획재정부의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경비지침에 따라 사업비가 편성되고 정산된다. 본 사업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KDI 규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 지침에는 전문가의 등급, 항공료, 출장비, 자문료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지침도 매년 수정하고 있다.

사업비는 반드시 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SP 사업 중에는 연구인력 인건비, 일반관리만을 제외한 모든 경비는 정산하되, 원가회계감사를 받는 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4. 결어 : 시사점과 고려사항

사업형태의 결정에는 사업목적, 목표 집단,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 활동(협력수단), 운영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사업 활동과 운영방식이다. 따라서 사업 형태의 결정은 사업의 주요활동과 운영방식을 재정의하고 그와 함께 사업의 기대효과를 기초로 연계·통합·축소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사업, 기획사업,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 가능하지만, 상술한 개념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중장기연수와 전문가 파견은 세 개의 사업과 연계 추진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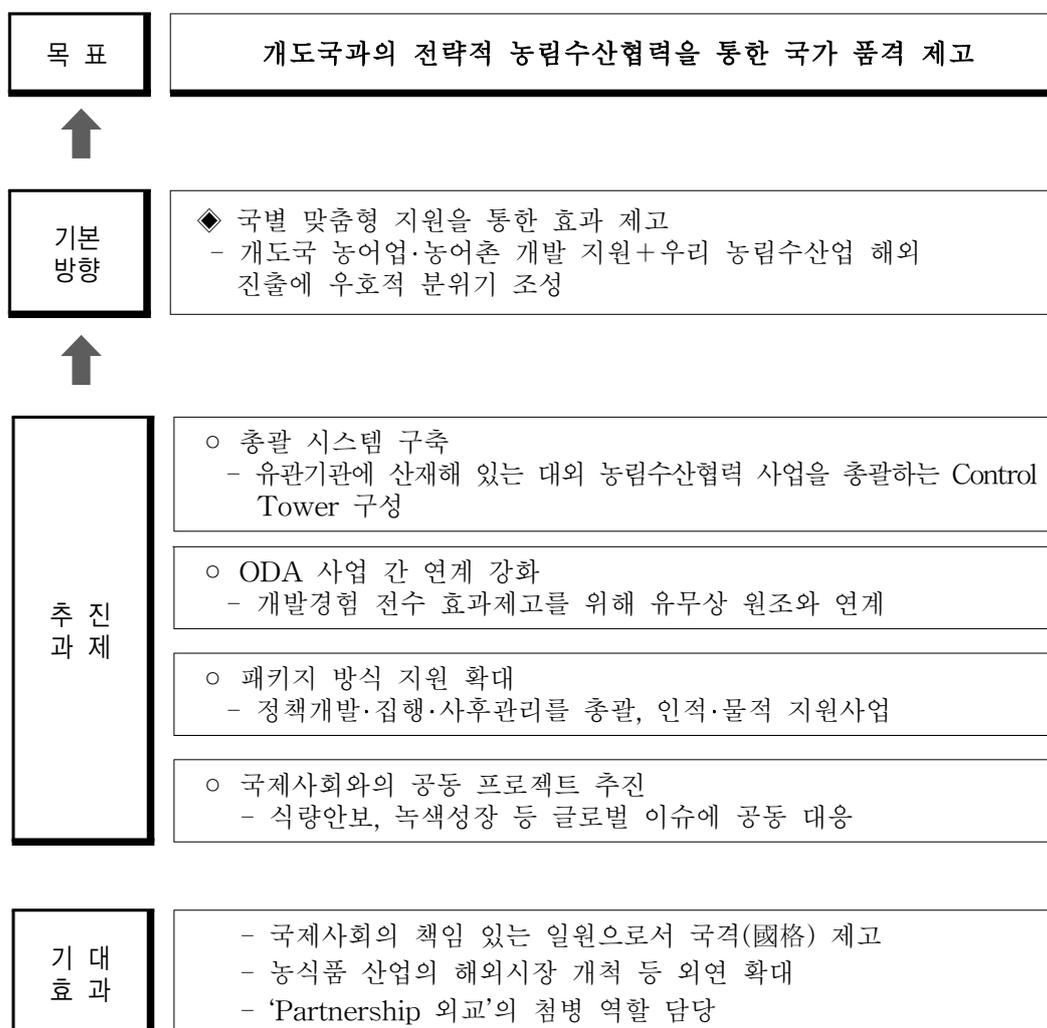
사업발굴은 다양한 절차와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목표 집단과의 확인과정을 통해 사업이 발굴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은 대동소이하다. 그 구체적 추진과정은 사업목적, 내용, 사업유형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사업유형과 운영방식에 따라 추진활동이나 과정이 생략, 축소 또는 확대되기도 한다. 사업의 추진과정은 언급한 세 개의 사업유형에

대한 재정의를 기초로 농업과 농촌개발경험 모델 전수에 적합하도록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

사업의 매뉴얼화는 주요한 사업 활동의 개념, 내용, 책임, 추진과정, 운영방식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매뉴얼은 사업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도록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매뉴얼은 사업운영의 경직성보다는 융통성을 추구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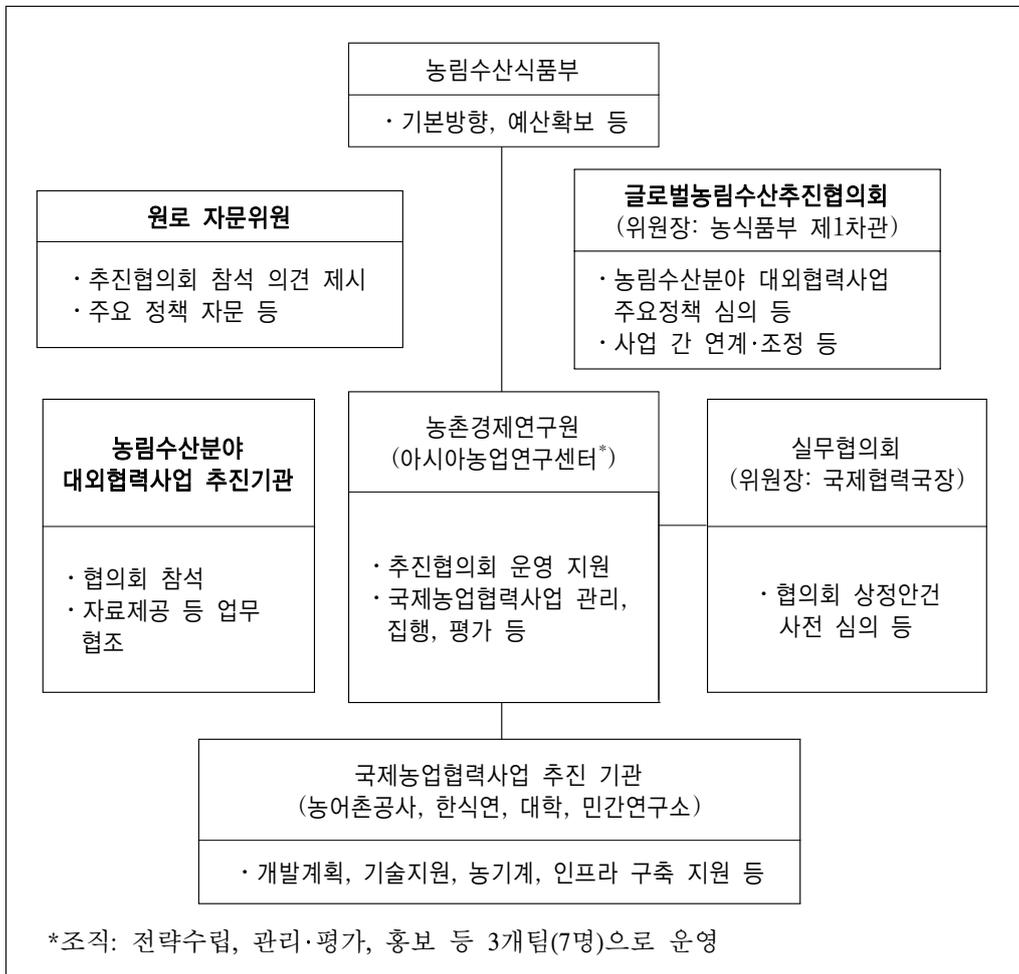
2010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전략¹



¹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 1차 회의(2010.3.30) 보고자료.

부록 2

국제농업협력 시스템 구축²



² 농식품부 국제협력국, “2010년 농림수산분야 대외협력사업(ODA) 추진계획”, 2010. 2

부록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국제협력 관련조항

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상호주의 및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7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어업 및 식품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농어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 및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어업·농어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록 4

농업관측사업 실시요령³

제19조(사업계획수립): 농경연 원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농업관측사업계획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관측전담 연구인력, 관측품목, 자료 수집계획, 관측결과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사업평가): 농경연 원장은 매년 관측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는 농업관측정보 수요자인 농업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관측 관련 공무원, 농업관련기관의 임·직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측실적 및 성과 등을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1조(예산편성): ① 농경연 원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익년도 농업관측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경연의 농업관측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결산): 농경연 원장은 지원 받은 관측사업 자금을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익년 1월 말까지 결산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³ 농림부훈령 제1033호, 2000.6.27.

부록 5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09. 5. 27) 및 시행령 중 관련조항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수산물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①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평가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수산물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지원
 4.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관련 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⑥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권한은 위임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 차장, 산림청 차장, 국립수산과학원장
2. 민간위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 제 1차관과 제2항제2호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 ④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시행령

제5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 차장, 산림청 차장, 국립수산과학원장
2. 민간위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과 제2항제2호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 ④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농업연구·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농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임업 연구·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임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수산연구·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수산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2. 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수실용기술 발굴 및 보급·확산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
 4.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5.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부록 6

농업분야 중점지원대상국 선정지표

부표 1. 국가별 수원수요 지표

국 가	국민 소득 (\$, 2008)	국민 소득 (PPP기준, \$, 2008)	총수원액 (\$, 2008)	영양 실조율 (%, 2008)	식량수 입비중 (2008, %)	칼로리 결핍량 (Kcal, 2006)	농업 생산성 (\$, 2008)	비료 사용량 (kg per hect, 2007)
Afghanistan	366	1100	4865080000		7.2			20
Albania	3911	7520	385660000	5	16.4	160		633
Algeria	4845	7890	315990000	5	19.8	180	2159	150
Angola	4714	4830	368810000	44		290	249	34
Argentina	8236	14000	130500000	5	4.5	200	11793	552
Armenia	3873	6310	302630000	23	18.7	250	5000	169
Azerbaijan	5315	7770	235090000	11	15.6	130	1274	107
Bangladesh	497	1450	2061400000	26	22.5	290	418	1912
Belarus	6230	12120	110180000	5	7.3	340	4984	2177
Belize	4218	5940	25220000	5	12.7	430	4735	0
Benin	771	1470	640830000	19	30.7	200		0
Bhutan	1869	4820	86520000		16.2		495	96
Bolivia	1720	4140	627880000	23	9.4	260	723	46
Bosnia Herzegovina	4906	8360	482440000	5	15.8	140	13301	575
Botswana	6982	13310	716380000	26	12.0	240	446	
Brazil	8205	10080	460360000	6	4.4	220	3858	1901
Bulgaria	6546	11370		5	7.5	200	9015	689
Burkina Faso	522	1160	997940000	9		170		51
Burundi	144	380	508500000	63	11.2	360		17
Cambodia	711	1870	742810000	25		250	388	0

국 가	국민 소득 (\$, 2008)	국민 소득 (PPP기준, \$, 2008)	총수원액 (\$, 2008)	영양 실조율 (%, 2008)	식량수 입비중 (2008, %)	칼로리 결핍량 (Kcal, 2006)	농업 생산성 (\$, 2008)	비료 사용량 (kg per hect, 2007)
Cameroon	1226	2170	524610000	23	18.0	160	730	59
Cape Verde	3193	3090	218540000	14	27.7	160	2132	
Central African	458	730	256430000	41		280	409	
Chad	770	1070	416220000	38		290		
Chile	10084	13250	73050000	5	7.3	200	6487	4651
China	3267	6010	1488900000	10	4.8	250	504	3311
Colombia	5416	8430	972010000	10	10.1	170	3206	3638
Comoros	824	1170	37250000	51	19.5	340	443	
Congo, DR	182	280	1609750000	75		430	166	0
Congo, Rep.	2966	2810	504950000	21		250		0
Costa Rica	6564	10960	66120000	5	8.5	150	5457	7902
Cote d'Ivoire	1137	1580	616510000	14	19.6	190	892	248
Djibouti	1030	2320	120870000	31		220	80	
Dominica	4883	8300	21870000	5	21.9	90	6564	2748
Dominican Rep	4576	7800	152640000	21	11.9	220	3989	
Ecuador	4056	7780	230610000	13	8.6	90	2092	25764
Egypt, Arab Rep.	1991	5470	1348390000	5	17.1	230	2931	5272
El Salvador	3605	6630	233350000	10	14.9	190	2857	1295
Eritrea	336	640	143130000	66		350	119	37
Ethiopia	317	870	3327460000	44	14.3	310	208	74
Fiji	4253	4320	45250000	5	15.5	40		238
Gabon	10037	12400	54500000	5	16.6	140	1860	45
Gambia, The	489	1280	93840000	29	29.8	240	271	30
Georgia	2970	4920	887710000	12	15.3	180	2258	419
Ghana	713	1320	1293290000	8	14.8	160	401	154
Grenada	6162	8430	33040000	23	20.9	250	2702	0
Guatemala	2848	4690	536030000	16	12.7	210	2815	1235
Guinea	386	970	318980000	16	13.2	130	321	14
Guinea-Bissau	273	520	131620000	31		240	325	
Guyana	1513	3030	165540000	6	13.6	230	3356	327
Haiti	729	1350	911810000	58		430		
Honduras	1823	3830	564330000	12	14.7	230	2045	1750
India	1017	2930	2107660000	22	2.5	260	478	1423

국 가	국민 소득 (\$, 2008)	국민 소득 (PPP기준, \$, 2008)	총수원액 (\$, 2008)	영양 실조율 (%, 2008)	식량수 입비중 (2008, %)	칼로리 결핍량 (Kcal, 2006)	농업 생산성 (\$, 2008)	비료 사용량 (kg per hect, 2007)
Indonesia	2246	3600	1225210000	16	7.3	230	705	1696
Iran		10850	98360000	5	1.9	220	3061	851
Iraq		3000	9870220000					408
Jamaica	5438	7370	79350000	5	12.2	170	2459	221
Jordan	3596	5720	742220000	5	16.8	110	2594	10078
Kazakhstan	8513	9720	332550000	5	7.8	200	2027	54
Kenya	783	1560	1360440000	30	11.6	220	345	260
Kiribati	1414	3620	26900000	5		140	1454	
Kosovo	3035	5200						
Kyrgyz Republic	958	2150	359930000	5	15.4	70	1041	225
Lao PDR	893	2050	495600000	19		250	516	
Lebanon	6978	11750	1075930000	5	15.8	160	34669	4171
Lesotho	791	1970	143400000	15		110	189	
Liberia	222	310	1250360000	38		310		
Macedonia, FYR	4664	9250	220540000	5	11.0	160	5165	661
Madagascar	495	1050	841420000	35	10.6	260	182	32
Malawi	288	810	912660000	29	12.0	290	136	344
Malaysia	8209	13740	158210000	5	7.1	130	611	8115
Maldives	4135	5290	54260000	7	15.9	80		53
Mali	688	1100	963800000	10	12.4	210	523	0
Marshall Islands	2655	4500	53220000					0
Mauritania	889	2000	310680000	8	28.2	130	424	
Mauritius	7345	12580	109650000	6	20.9	230	5128	2540
Mexico	10232	14340	149010000	5	7.1	230	3306	655
Micronesia	2334	3270	94140000					
Moldova	1694	3270	298750000	5	12.4	180	1444	196
Mongolia	1991	3470	246460000	29	11.8	260	1821	71
Montenegro	7859	13420	106300000				2557	
Morocco	2769	4190	1216870000	5	12.3	230	2523	326
Mozambique	440	770	1993780000	37	14.2	280	199	31

국 가	국민 소득 (\$, 2008)	국민 소득 (PPP기준, \$, 2008)	총수원액 (\$, 2008)	영양 실조율 (%, 2008)	식량수 입비중 (2008, %)	칼로리 결핍량 (Kcal, 2006)	농업 생산성 (\$, 2008)	비료 사용량 (kg per hect, 2007)
Myanmar		1020	533500000	17		300		113
Namibia	4149	6250	206820000	19	13.9	140	1727	23
Nepal	438	1120	716310000	16		190	240	170
Nicaragua	1163	2620	740730000	21	16.0	320	2408	294
Niger	364	680	605370000	28	24.9	250		4
Nigeria	1370	1980	1289780000	8	9.8	190		24
Pakistan	991	2590	1539360000	23	11.9	280	892	1662
Palau	8911	10000	42940000					
Panama	6793	12630	28540000	17	10.8	190	4425	331
Papua New Guinea	1253	2030	304390000				663	758
Paraguay	2561	4660	133540000	12	6.6	210	2497	798
Peru	4477	7950	465520000	13	4.5	250	1530	1090
Philippines	1847	3900	60890000	15	10.8	240	1211	1412
Romania	9300	13380		5	7.1	260	7991	453
Rwanda	458	1110	930600000	40	10.3	330	237	74
Samoa	2926	4410	39450000	5	25.5	210	1835	15
Sao Tome Principe	1090	1790	47030000	5	27.3	110		
Senegal	1087	1780	1057720000	25	25.9	170	235	20
Serbia	6811	10380	1046670000		5.8	110		1274
Seychelles	9580	19650	12080000	8	20.3	160	691	970
Sierra Leone	352	770	366820000	46		390		
Solomon Islands	1263	2230	224320000	9		130	1341	
South Africa	5678	9790	1124940000	5	5.3	210	3839	439
Sri Lanka	2013	4460	730440000	21	13.9	250	903	2993
St. Kitts & Nevis	11046	15490	46240000	15	18.7	180	1603	135
St. Lucia	5854	9020	19090000	8	21.1	140	1637	
St. Vincent	5480	8570	26800000	6	23.2	0	2644	
Sudan	1353	1920	2383580000	20	7.5	240	883	36
Suriname	5888	6680	101500000	7	11.7	180	3179	1113
Swaziland	2429	5000	67380000	18	20.5	220	1154	
Syria	2682	4490	136240000	5	12.6	130	4543	806

국 가	국민 소득 (\$, 2008)	국민 소득 (PPP기준, \$, 2008)	총수원액 (\$, 2008)	영양 실조율 (%, 2008)	식량수 입비중 (2008, %)	칼로리 결핍량 (Kcal, 2006)	농업 생산성 (\$, 2008)	비료 사용량 (kg per hect, 2007)
Tajikistan	751	1870	290640000	26		190	542	312
Tanzania	496	1260	2330720000	35	11.7	280	326	56
Thailand	4043	7770	-620530000	17	4.9	210	705	1171
Timor-Leste	453	4690	277540000	23		230		
Togo	449	830	329650000	37	14.6	280		59
Tonga	2687	3980	25700000		22.0		3724	101
Tunisia	3903	7460	478820000	5	10.2	190	3498	337
Turkey	9942	13420	2023710000	5	4.3	170	3311	1000
Turkmenistan	3039	6130	18130000	6		170	336	
Uganda	453	1140	1656760000	15	13.0	190	197	14
Ukraine	3899	7210	617570000	5	7.4	130	2394	327
Uruguay	9654	12550	33290000	5	8.1	0	9735	1832
Uzbekistan	1023	2660	187240000	13		240	2445	
Vanuatu	2521	4800	91670000	6	21.3	150	1115	
Venezuela, RB	11246	12850	59220000	12	16.3	190	8036	1932
Vietnam	1051	2700	2551760000	13	6.4	280	352	4251
Palestine			2592750000	15		180		
Yemen, Rep.	1160	2220	305480000	32	24.8	270		213
Zambia	1134	1230	1085910000	45	5.6	330	220	275
Zimbabwe		170	611020000	39	11.0	310		335

부표 2. 국가별 발전가능성 지표

국 가	평균 성장률 (%, 1999~2008)	반부패 지수 (2008)	정부 효율성 지수 (2008)	곡물 생산 증가율 (1999~2001 =100, 2007)	강수량 (mm, 2008)	인당 경작 면적 (ha, 2008)	농업 비중 (%, 2008)	면적당 곡물 수확량 (kg/ha, 2007)
Afghanistan	11.3	-1.64	-1.31	167	327	0.30	31.6	1344
Albania	5.7	-0.45	-0.34	116	1485	0.18	20.8	3818
Algeria	3.9	-0.44	-0.50	151	89	0.22	6.9	1257
Angola	12.0	-1.22	-0.98	177	1010	0.19	6.6	490
Argentina	3.9	-0.44	-0.18	139	591	0.82	9.8	3918
Armenia	11.2	-0.54	-0.07	190	562	0.13	17.8	2405
Azerbaijan	16.6	-1.00	-0.64	138	447	0.22	6.3	2741
Bangladesh	5.8	-1.10	-0.77	114	2666	0.05	19.0	3972
Belarus	8.0	-0.79	-1.11	150	618	0.57	9.8	3556
Belize	5.5	-0.28	-0.42	106	1705	0.22	12.2	2428
Benin	4.3	-0.42	-0.52	100	1039	0.32		1330
Bhutan	8.9	0.72	0.11	174	2200	0.19	18.7	1947
Bolivia	3.7	-0.47	-0.81	121	1146	0.38	13.5	1849
Bosnia Herzegovina	5.4	-0.32	-0.55	113	1028	0.27	9.1	4416
Botswana	4.7	1.00	0.67	110	416	0.13	1.9	465
Brazil	3.7	-0.03	-0.01	143	1782	0.31	6.7	3829
Bulgaria	5.6	-0.17	0.10	68	608	0.40	7.3	4094
Burkina Faso	5.1	-0.36	-0.67	120	748	0.35	33.3	1035
Burundi	2.6	-0.97	-1.21	102	1274	0.13		1313
Cambodia	9.3	-1.14	-0.81	174	1904	0.27	34.6	2805
Cameroon	3.7	-0.90	-0.80	110	1604	0.32	19.5	1346
Cape Verde	5.2	0.75	0.05	102	228	0.10	8.8	337
Central African	0.8	-0.90	-1.45	101	1343	0.45	52.9	1145
Chad	9.5	-1.45	-1.48	100	322	0.40	13.6	812
Chile	4.2	-0.44	0.24	115	1522	0.08	3.9	5842
China	10.0	-0.25	0.13	123		0.11	11.3	5535
Colombia	4.4	-0.75	-1.88	98	2612	0.05	8.6	4154
Comoros	1.9	-1.16	-1.34	107	900	0.13	45.8	1313
Congo, DR	3.4	-1.31	-1.89	96	1543	0.11	40.2	772
Congo, Rep.	4.2			114	1646	0.14	4.1	776
Costa Rica	4.6	0.48	0.39	117	2926	0.04	7.3	3803

국 가	평균 성장률 (%, 1999~2008)	반부패 지수 (2008)	정부 효율성 지수 (2008)	곡물 생산 증가율 (1999~2001 =100, 2007)	강수량 (mm, 2008)	인당 경작 면적 (ha, 2008)	농업 비중 (%, 2008)	면적당 곡물 수확량 (kg/ha, 2007)
Cote d'Ivoire	0.1	-1.17	-1.39	106	1348	0.14	25.0	1724
Djibouti	3.1	-0.33	-0.98	101	220	0.00	3.9	1667
Dominica	2.0	0.67	0.72	100	2083	0.07	17.2	1448
Dominican Rep	5.3	-0.62	-0.40	123	1410	0.08	6.5	4246
Ecuador	4.8	-0.79	-0.97	104	2087	0.09	6.7	2991
Egypt, Arab Rep.	4.9	-0.67	-0.37	114	51	0.04	13.2	7506
El Salvador	2.8	-0.22	-0.15	103	1724	0.11	13.2	3142
Eritrea	0.3	-0.38	-1.41	105	384	0.13	24.3	466
Ethiopia	8.0	-0.66	-0.43	134	848	0.18	44.5	1422
Fiji	0.9	-0.31	-0.95	85	2592	0.20	15.1	1985
Gabon	1.8	-1.07	-0.70	103	1831	0.23	4.1	1663
Gambia, The	5.1	-0.78	-0.77	62	836	0.22	28.5	978
Georgia	6.9	-0.23	0.18	78	1026	0.11	10.0	2171
Ghana	5.4	-0.06	-0.08	125	1187	0.18	33.5	1328
Grenada	3.2	0.37	0.19	96	2350	0.02	5.9	1000
Guatemala	3.8	-0.72	-0.49	134	1996	0.12	11.6	1624
Guinea	3.1	-1.35	-1.39	125	1651	0.23	24.8	1631
Guinea-Bissau	1.4	-1.16	-1.26	114	1577	0.19	55.5	1422
Guyana	1.8	-0.47	-0.17	96	2387	0.55	28.1	4161
Haiti	0.6	-1.21	-1.29	96	1440	0.09		897
Honduras	5.1	-0.82	-0.57	150	1976	0.15	13.6	1655
India	7.1	-0.37	-0.03	118	1083	0.14	17.5	2647
Indonesia	5.2	-0.64	-0.29	134	2702	0.10	14.4	4694
Iran	5.9	-0.71	-0.75	121	228	0.24	10.2	2479
Iraq	-2.7	-1.48	-1.41	99	216	0.17	8.6	1049
Jamaica	1.5	-0.53	0.09	96	2051	0.07	5.3	1253
Jordan	6.8	0.41	0.27	142	111	0.02	2.9	928
Kazakhstan	9.4	-0.95	-0.47	140	250	1.47	5.7	1011
Kenya	3.8	-1.01	-0.60	123	630	0.14	27.0	1417
Kiribati	2.1	0.01	-0.58	128		0.02	27.5	
Kosovo		-0.66	-0.81			0.17	12.0	
Kyrgyz Republic	4.9	-1.06	-0.70	100	533	0.24	29.8	2380
Lao PDR	6.7	-1.23	-0.84	139	1834	0.19	34.7	3778

국 가	평균 성장률 (%, 1999~2008)	반부패 지수 (2008)	정부 효율성 지수 (2008)	곡물 생산 증가율 (1999~2001 =100, 2007)	강수량 (mm, 2008)	인당 경작 면적 (ha, 2008)	농업 비중 (%, 2008)	면적당 곡물 수확량 (kg/ha, 2007)
Lebanon	4.1	-0.83	-0.64	95	661	0.03	5.3	2186
Lesotho	3.9	0.04	-0.31	77	788	0.15	7.2	625
Liberia	3.7	-0.60	-1.36	113	2391	0.11	61.3	1553
Macedonia, FYR	3.0	-0.11	-0.14	98	619	0.21	10.9	3537
Madagascar	4.0	-0.10	-0.59	125	1513	0.16	25.2	2291
Malawi	3.7	-0.59	-0.65	138	1181	0.21	34.3	1599
Malaysia	5.5	0.14	1.13	132	2875	0.07	10.2	3557
Maldives	6.6	-0.60	-0.35	50	1972	0.01	6.2	3917
Mali	5.4	-0.47	-0.78	122	282	0.39	36.5	1172
Marshall Islands	2.6	-0.54	-1.22	303		0.03		
Mauritania	4.5	0.84	0.76	103	92	0.14	12.5	791
Mauritius	4.3	-0.80	-0.97	88	2041	0.07	4.4	7895
Mexico	2.8	-0.26	0.18	117	752	0.23	3.8	3454
Micronesia	0.5	-0.43	-0.63	103		0.02		1193
Moldova	5.8	-0.64	-0.76	70	450	0.50	10.9	3203
Mongolia	6.7	-0.62	-0.68	134	241	0.33	21.1	1383
Montenegro	5.0	-0.28	0.01			0.28	8.8	2203
Morocco	4.7	-0.26	-0.09	122	346	0.26	14.6	1003
Mozambique	7.4	-0.55	-0.38	112	1032	0.20	28.6	822
Myanmar	13.0	-1.69	-1.68	151	2091	0.22	48.4	3585
Namibia	4.9	0.59	0.31	129	285	0.38	9.1	417
Nepal	3.9	-0.68	-0.75	118	1500	0.08	33.7	2361
Nicaragua	3.5	-0.81	-0.96	120	2391	0.35	19.4	1872
Niger	4.3	-0.82	-0.79	152	151	1.04		504
Nigeria	6.1	-0.92	-0.98	118	1150	0.25	32.7	1598
Pakistan	4.8	-0.77	-0.73	117	494	0.13	20.4	2674
Palau	1.3	-0.30	-0.56			0.05	3.5	
Panama	6.0	-0.15	0.16	118	2692	0.16	6.4	2246
Papua New Guinea	2.4	-1.13	-0.80	107	3142	0.04	33.6	3727
Paraguay	2.9	-0.93	-0.78	167	1130	0.70	20.2	2323
Peru	5.6	-0.26	-0.30	135	1738	0.13	7.2	3816
Philippines	5.0	-0.75	0.00	128	2348	0.06	14.9	3334
Romania	6.0	-0.06	-0.14	69	637	0.40	7.1	3247

국 가	평균 성장률 (%, 1999~2008)	반부패 지수 (2008)	정부 효율성 지수 (2008)	곡물 생산 증가율 (1999~2001 =100, 2007)	강수량 (mm, 2008)	인당 경작 면적 (ha, 2008)	농업 비중 (%, 2008)	면적당 곡물 수확량 (kg/ha, 2007)
Rwanda	7.4	0.03	-0.20	120	1212	0.13	37.4	1126
Samoa	4.2	0.24	-0.07	108		0.14	10.8	
Sao Tome Principe	6.8	-0.44	-0.74	113	3200	0.06		2308
Senegal	4.1	-0.45	-0.12	62	686	0.25	15.7	1075
Serbia	5.0	-0.16	-0.28			0.45	13.0	4583
Seychelles	2.3	0.23	-0.01	97	2330	0.01	2.3	
Sierra Leone	10.3	-1.07	-1.13	185	2526	0.17	50.2	989
Solomon Islands	1.8	-0.41	-0.79	117	3028	0.03	36.0	3931
South Africa	4.1	0.30	0.75	93	495	0.30	3.3	3807
Sri Lanka	5.2	-0.15	-0.29	106	1712	0.05	13.4	3660
St. Kitts & Nevis	4.1	1.00	0.66	61	1427	0.08	2.6	
St. Lucia	2.1	1.17	0.88	84	2301	0.02	4.8	
St. Vincent	4.0	1.00	0.74	120	1583	0.06	7.9	3190
Sudan	7.6	-1.49	-1.41	116	416	0.48	25.8	567
Suriname	4.7	-0.09	0.00	106	2331	0.11	4.7	4189
Swaziland	3.4	-0.38	-0.66	105	788	0.15	7.3	560
Syria	4.3	-1.07	-0.67	111	252	0.24	20.0	1622
Tajikistan	8.6	-0.99	-0.88	156	691	0.11	18.0	2140
Tanzania	6.6	-0.51	-0.45	146	1071	0.22		1224
Thailand	4.8	-0.38	0.11	122	1622	0.23	11.6	3014
Timor-Leste	3.3	-0.89	-1.00	100		0.16		1103
Togo	1.9	-0.98	-1.43	105	1168	0.39		1136
Tonga	1.6	-0.73	-0.41	108		0.15	25.6	
Tunisia	4.8	-0.04	0.35	126	207	0.27	9.9	1399
Turkey	4.7	0.10	0.20	103	593	0.30	8.6	2601
Turkmenistan	15.0	-1.34	-1.16	128	161	0.37	12.3	2974
Uganda	7.3	-0.79	-0.51	104	1180	0.18	22.7	1534
Ukraine	6.9	-0.72	-0.60	117	565	0.70	8.3	3486
Uruguay	2.9	1.12	0.48	146	1265	0.41	10.8	3944
Uzbekistan	6.3	-1.08	-0.68	141	206	0.16	21.4	4350
Vanuatu	3.2	0.33	-0.36	113		0.09	14.3	552
Venezuela, RB	4.7	-1.13	-0.85	109	1875	0.10		3592
Vietnam	7.5	-0.76	-0.31	129	1821	0.07	22.1	5064

국 가	평균 성장률 (%, 1999~2008)	반부패 지수 (2008)	정부 효율성 지수 (2008)	곡물 생산 증가율 (1999~2001 =100, 2007)	강수량 (mm, 2008)	인당 경작 면적 (ha, 2008)	농업 비중 (%, 2008)	면적당 곡물 수확량 (kg/ha, 2007)
Palestine	-2.0	-1.13	-1.36	90	402	0.03		
Yemen, Rep.	4.0	-0.73	-0.99	127	167	0.06		939
Zambia	5.1	-0.48	-0.66	124	1020	0.43	21.2	2146
Zimbabwe	-5.8	-1.37	-1.56	61		0.26	19.1	309

부표 3. 국가별 양자관계 및 원조일관성 지표

국 가	인구 (백만 명, 2008)	GDP (2000\$, mil.) 2008	한국 총수입액 (2009, mill\$)	한국 총수출액 (2009, mill\$)	무상원조 협력대상국
Afghanistan	29.0		0.8	64.6	일반협력
Albania	3.1	56.6	1.0	12.1	
Algeria	34.4	752.8	605.7	766.2	일반협력
Angola	18.0	241.0	0.5	1124.1	일반협력
Argentina	39.9	3945.9	800.3	505.9	
Armenia	3.1	46.8	7.2	81.1	
Azerbaijan	8.7	185.0	8.9	226.1	일반협력
Bangladesh	160.0	739.4	65.7	731.6	중점협력
Belarus	9.7	240.5	8.6	78.9	
Belize	0.3	11.9	2.8	7.0	
Benin	8.7	31.2	4.7	40.1	
Bhutan	0.7	8.6	0.0	3.9	
Bolivia	9.7	113.7	177.2	13.2	일반협력
Bosnia Herzegovina	3.8	81.3	0.6	15.5	
Botswana	1.9	86.4	0.9	5.8	
Brazil	192.0	8538.1	2869.0	4746.1	
Bulgaria	7.6	195.9	33.8	62.2	
Burkina Faso	15.2	40.0	0.0	15.4	
Burundi	8.1	9.0	0.0	0.1	
Cambodia	14.6	74.4	12.6	257.5	중점협력
Cameroon	19.1	134.2	202.2	38.6	일반협력
Cape Verde	0.5	7.9	0.0	1.0	
Central African	4.3	10.1	0.4	78.3	
Chad	10.9	30.2	0.2	2.0	
Chile	16.8	1043.8	3610.9	2386.5	
China	1324.7	26025.7	60967.8	79323.3	일반협력
Colombia	45.0	1344.2	125.5	954.3	일반협력
Comoros	0.6	2.4	0.0	0.1	

국 가	인구 (백만 명, 2008)	GDP (2000\$, mil.) 2008	한국 총수입액 (2009, mill\$)	한국 총수출액 (2009, mill\$)	무상원조 협력대상국
Congo, DR	64.3	62.1	0.0	0.0	일반협력
Congo, Rep.	3.6	43.4	73.8	32.9	
Costa Rica	4.5	234.4	115.4	224.3	
Cote d'Ivoire	20.6	109.0			일반협력
Djibouti	0.8	7.2	0.0	29.3	
Dominica	0.1	3.2	0.8	7.5	
Dominican Rep	10.0	360.6	78.9	109.8	일반협력
Ecuador	13.5	235.4	18.6	556.1	일반협력
Egypt, Arab Rep.	81.5	1455.9	1164.4	1354.6	중점협력
El Salvador	6.1	164.2	6.0	58.3	일반협력
Eritrea	4.9	7.4	0.1	2.4	
Ethiopia	80.7	153.2	3.4	82.2	중점협력
Fiji	0.8	18.4	2.7	27.0	일반협력
Gabon	1.4	60.4	51.3	11.4	
Gambia, The	1.7	6.2	0.1	2.1	
Georgia	4.3	54.6	7.0	37.4	
Ghana	23.4	76.8	13.9	170.5	일반협력
Grenada	0.1	5.0	0.1	1.4	
Guatemala	13.7	260.9	44.4	262.6	중점협력
Guinea	9.8	40.3	7.6	21.8	
Guinea-Bissau	1.6	2.2	0.3	0.6	
Guyana	0.8	8.4	1.9	7.7	
Haiti	9.9	38.2	5.2	14.5	
Honduras	7.3	105.2	32.0	114.4	일반협력
India	1140.0	8179.4	5757.7	7853.7	
Indonesia	227.3	2472.3	7884.3	7435.2	중점협력
Iran	72.0	1518.0	5896.5	3855.1	일반협력
Iraq	30.7	191.5	3031.4	327.0	중점협력
Jamaica	2.7	102.0	5.3	24.7	일반협력

국 가	인구 (백만 명, 2008)	GDP (2000\$, mil.) 2008	한국 총수입액 (2009, mill\$)	한국 총수출액 (2009, mill\$)	무상원조 협력대상국
Jordan	5.9	146.2	17.1	500.3	일반협력
Kazakhstan	15.7	372.7	251.3	308.7	중점협력
Kenya	38.8	175.7	5.0	136.8	일반협력
Kiribati	0.1	0.8	0.2	0.2	
Kosovo	1.8	0.0			
Kyrgyz Republic	5.3	19.8	2.3	145.5	일반협력
Lao PDR	6.2	29.5	46.3	46.5	중점협력
Lebanon	4.2	243.8	25.3	199.2	
Lesotho	2.0	10.6	0.2	37.4	
Liberia	3.8	5.6	18.9	2451.0	
Macedonia, FYR	2.0	44.5	1.1	7.6	
Madagascar	19.1	52.0	1.4	67.3	일반협력
Malawi	14.8	23.5	18.1	11.9	
Malaysia	27.0	1391.6	7406.9	4691.0	
Maldives	0.3	10.4	0.2	4.7	
Mali	12.7	37.4	0.2	1.3	
Marshall Islands	0.1	1.3			
Mauritania	3.2	0.0	0.3	6.7	
Mauritius	1.3	61.1	4.0	39.4	
Mexico	106.4	7010.1	918.0	7952.5	
Micronesia	0.1	2.2			
Moldova	3.6	21.0	2.5	11.7	
Mongolia	2.6	19.4	27.3	208.4	중점협력
Montenegro	0.6	14.7	0.0	0.0	
Morocco	31.6	551.6	151.6	341.9	일반협력
Mozambique	22.4	79.9	0.0	23.7	
Myanmar	49.6	100.0	101.7	213.3	일반협력
Namibia	2.1	57.8	25.8	16.4	
Nepal	28.8	73.0	0.8	20.8	일반협력

국 가	인구 (백만 명, 2008)	GDP (2000\$, mil.) 2008	한국 총수입액 (2009, mill\$)	한국 총수출액 (2009, mill\$)	무상원조 협력대상국
Nicaragua	5.7	51.3	2.1	224.3	일반협력
Niger	14.7	26.4	1.5	7.1	
Nigeria	151.2	741.8	78.5	2251.3	중점협력
Pakistan	166.1	1080.0	552.1	734.5	일반협력
Palau	0.0	1.3	0.0	2.5	
Panama	3.4	189.7	763.6	5654.9	
Papua New Guinea	6.6	44.4	200.1	27.4	
Paraguay	6.2	94.5	2.5	82.2	중점협력
Peru	28.8	842.4	790.8	629.9	중점협력
Philippines	90.3	1107.1	2537.9	3821.8	중점협력
Romania	21.5	612.0	220.0	438.4	
Rwanda	9.7	30.4	0.1	7.9	
Samoa	0.2	3.1	0.4	4.2	
Sao Tome Principe	0.2	0.0			
Senegal	12.2	65.5	6.3	36.0	중점협력
Serbia	7.4	133.0		53.1	
Seychelles	0.1	7.1	2.0	8.6	
Sierra Leone	5.6	14.5	0.6	5.2	
Solomon Islands	0.5	5.8	20.3	2.1	
South Africa	48.7	1832.5	1040.2	1157.7	
Sri Lanka	20.2	241.7	52.0	548.2	중점협력
St. Kitts & Nevis	0.0	4.5	0.0	1.4	
St. Lucia	0.2	8.5	20.6	1.9	
St. Vincent	0.1	4.7	0.0	0.4	
Sudan	41.3	220.0	89.3	149.5	일반협력
Suriname	0.5	13.5	0.2	12.2	
Swaziland	1.2	18.2	43.1	30.3	
Syria	20.6	273.7	59.6	698.8	
Tajikistan	6.8	16.7	2.7	34.1	

국 가	인구 (백만 명, 2008)	GDP (2000\$, mil.) 2008	한국 총수입액 (2009, mill\$)	한국 총수출액 (2009, mill\$)	무상원조 협력대상국
Tanzania	42.5	153.9	8.5	67.8	중점협력
Thailand	67.4	1779.2	3090.0	4965.6	
Timor-Leste	1.1	3.6	0.0	4.2	일반협력
Togo	6.5	15.8	4.9	25.3	
Tonga	0.1	1.7	0.7	0.1	
Tunisia	10.3	283.4	51.2	119.8	일반협력
Turkey	73.9	3768.7	258.3	2834.9	
Turkmenistan	5.0	85.8	0.1	19.9	일반협력
Uganda	31.7	110.2	3.5	6.9	
Ukraine	46.3	534.7	618.9	516.0	일반협력
Uruguay	3.3	293.0	37.5	86.6	
Uzbekistan	27.3	229.3	230.0	982.1	중점협력
Vanuatu	0.2	3.1	0.9	5.4	
Venezuela, RB	27.9	1666.2	17.1	646.6	
Vietnam	86.2	558.0	1782.2	6828.2	중점협력
Palestine	3.9	37.8	0.0	0.0	일반협력
Yemen, Rep.	22.9	128.6	46.0	162.4	일반협력
Zambia	12.6	48.9	262.6	11.4	일반협력
Zimbabwe	12.5	56.2	33.4	8.1	일반협력

부표 4. 국가의 요소별 및 전체 표준점수

	일반 수원 수요	농업 수원 수요	수원 수요	일반 발전 가능성	농업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	잠재력	현재 관계	양자 관계	무상 원조 협력 대상	총점 수 (가중 치1)	총점 수 (가중 치2)
Ethiopia	0.93	0.75	0.81	0.59	0.63	0.62	0.51	0.44	0.47	1.0	0.67	0.73
Indonesia	0.73	0.46	0.55	0.51	0.48	0.49	0.82	0.85	0.83	1.0	0.66	0.72
China	0.66	0.40	0.49	0.82	0.25	0.44	1.00	1.00	1.00	0.5	0.63	0.61
Bangladesh	0.90	0.71	0.78	0.36	0.46	0.43	0.64	0.46	0.55	1.0	0.63	0.69
Tanzania	0.91	0.68	0.76	0.57	0.52	0.54	0.46	0.44	0.45	1.0	0.62	0.69
India	0.85	0.51	0.62	0.71	0.44	0.53	1.00	0.81	0.91		0.62	0.51
Vietnam	0.86	0.43	0.58	0.58	0.46	0.50	0.55	0.67	0.61	1.0	0.61	0.67
Nigeria	0.80	0.46	0.57	0.36	0.62	0.53	0.63	0.50	0.57	1.0	0.60	0.67
Cambodia	0.68	0.55	0.60	0.45	0.73	0.64	0.42	0.44	0.43	1.0	0.60	0.67
Philippines	0.43	0.50	0.48	0.54	0.49	0.50	0.59	0.63	0.61	1.0	0.58	0.65
Senegal	0.76	0.67	0.70	0.54	0.42	0.46	0.42	0.43	0.43	1.0	0.58	0.65
Mongolia	0.49	0.62	0.58	0.50	0.58	0.55	0.40	0.44	0.42	1.0	0.57	0.64
Zambia	0.79	0.67	0.71	0.47	0.60	0.55	0.42	0.44	0.43	0.5	0.56	0.55
Ghana	0.83	0.48	0.60	0.69	0.63	0.65	0.43	0.44	0.44	0.5	0.55	0.55
Lao PDR	0.61	0.52	0.55	0.37	0.61	0.53	0.41	0.44	0.42	1.0	0.55	0.63
Madagascar	0.74	0.66	0.68	0.51	0.57	0.55	0.43	0.44	0.43	0.5	0.55	0.54
Congo, DR.	0.90	0.68	0.75	0.13	0.60	0.44	0.48	0.43	0.46	0.5	0.54	0.54
Mozambique	0.91	0.72	0.78	0.61	0.59	0.60	0.43	0.43	0.43		0.54	0.45
Rwanda	0.76	0.70	0.72	0.77	0.61	0.67	0.41	0.43	0.42		0.54	0.45
Sudan	0.89	0.54	0.65	0.31	0.63	0.53	0.47	0.44	0.45	0.5	0.54	0.53
Pakistan	0.82	0.59	0.66	0.37	0.40	0.39	0.67	0.47	0.57	0.5	0.54	0.53
Sri Lanka	0.58	0.54	0.55	0.62	0.36	0.45	0.44	0.45	0.45	1.0	0.53	0.61
Nicaragua	0.66	0.65	0.65	0.26	0.68	0.54	0.41	0.44	0.42	0.5	0.53	0.53
Myanmar	0.66	0.55	0.58	0.35	0.68	0.57	0.47	0.44	0.46	0.5	0.53	0.53
Sierra Leone	0.62	0.67	0.66	0.42	0.83	0.69	0.41	0.43	0.42		0.53	0.44
Guatemala	0.51	0.47	0.48	0.39	0.57	0.51	0.43	0.44	0.44	1.0	0.53	0.61
Kenya	0.83	0.61	0.68	0.31	0.53	0.46	0.46	0.44	0.45	0.5	0.53	0.52
Peru	0.35	0.45	0.42	0.62	0.43	0.49	0.50	0.48	0.49	1.0	0.52	0.60
Angola	0.46	0.64	0.58	0.43	0.58	0.53	0.44	0.46	0.45	0.5	0.52	0.52
Paraguay	0.42	0.41	0.41	0.25	0.69	0.55	0.41	0.44	0.42	1.0	0.51	0.60
Morocco	0.70	0.46	0.54	0.62	0.50	0.54	0.48	0.45	0.46	0.5	0.51	0.51
Cameroon	0.62	0.59	0.60	0.28	0.61	0.50	0.43	0.44	0.44	0.5	0.51	0.51
Kazakhstan	0.26	0.40	0.35	0.55	0.58	0.57	0.44	0.45	0.45	1.0	0.51	0.59
Afghanistan	0.92	0.33	0.53	0.36	0.67	0.57	0.43	0.44	0.43	0.5	0.51	0.51
Liberia	0.84	0.64	0.71	0.27	0.67	0.54	0.40	0.50	0.45		0.51	0.42
Malawi	0.76	0.67	0.70	0.38	0.66	0.57	0.42	0.43	0.43		0.51	0.42

	일반 수원 수요	농업 수원 수요	수원 수요	일반 발전 가능성	농업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	잠재력	현재 관계	양자 관계	무상 원조 협력 대상	총점 수 (가중 치1)	총점 수 (가중 치2)
Egypt, Arab Rep.	0.67	0.41	0.49	0.48	0.22	0.30	0.61	0.51	0.56	1.0	0.51	0.59
Bolivia	0.56	0.59	0.58	0.37	0.56	0.50	0.42	0.44	0.43	0.5	0.50	0.50
Honduras	0.56	0.49	0.52	0.41	0.62	0.55	0.41	0.44	0.43	0.5	0.50	0.50
Yemen, Rep.	0.56	0.79	0.71	0.30	0.37	0.35	0.44	0.44	0.44	0.5	0.50	0.50
Niger	0.68	0.76	0.73	0.32	0.59	0.50	0.42	0.43	0.43		0.50	0.41
Uzbekistan	0.51	0.44	0.46	0.40	0.40	0.40	0.45	0.47	0.46	1.0	0.50	0.58
Brazil	0.28	0.32	0.31	0.63	0.52	0.55	0.92	0.66	0.79		0.50	0.41
Nepal	0.70	0.44	0.53	0.35	0.55	0.48	0.44	0.43	0.44	0.5	0.49	0.49
Uganda	0.88	0.53	0.64	0.53	0.52	0.52	0.45	0.43	0.44		0.48	0.40
Mali	0.76	0.51	0.60	0.46	0.64	0.58	0.42	0.43	0.42		0.48	0.40
Bhutan	0.40	0.42	0.41	0.92	0.69	0.76	0.40	0.43	0.42		0.48	0.40
Zimbabwe	0.70	0.70	0.70	0.03	0.43	0.30	0.42	0.44	0.43	0.5	0.48	0.48
Cote d'Ivoire	0.66	0.58	0.61	0.07	0.53	0.37	0.43	0.43	0.43	0.5	0.47	0.48
Iraq	0.85	0.30	0.48	0.03	0.37	0.26	0.45	0.55	0.50	1.0	0.47	0.56
Algeria	0.32	0.51	0.44	0.45	0.49	0.47	0.50	0.48	0.49	0.5	0.47	0.48
Gambia, The	0.54	0.76	0.68	0.38	0.49	0.46	0.40	0.43	0.42		0.47	0.39
Benin	0.67	0.67	0.67	0.47	0.44	0.45	0.41	0.43	0.42		0.46	0.39
Burkina Faso	0.77	0.40	0.52	0.49	0.65	0.60	0.42	0.43	0.43		0.46	0.39
Comoros	0.53	0.82	0.72	0.11	0.55	0.40	0.40	0.43	0.42		0.46	0.39
Central African	0.59	0.63	0.61	0.11	0.70	0.50	0.40	0.44	0.42		0.46	0.38
Tunisia	0.37	0.38	0.38	0.72	0.47	0.55	0.43	0.44	0.43	0.5	0.46	0.47
Iran, Islamic Rep.	0.18	0.35	0.29	0.43	0.39	0.40	0.60	0.73	0.66	0.5	0.46	0.47
Armenia	0.38	0.60	0.53	0.73	0.51	0.58	0.40	0.44	0.42		0.46	0.38
Thailand	0.17	0.45	0.35	0.62	0.48	0.53	0.61	0.67	0.64		0.46	0.38
Jordan	0.52	0.29	0.37	0.86	0.40	0.55	0.42	0.45	0.43	0.5	0.46	0.46
Mauritania	0.57	0.55	0.56	0.80	0.39	0.53	0.40	0.43	0.42		0.45	0.38
Chad	0.62	0.63	0.63	0.35	0.49	0.44	0.41	0.43	0.42		0.45	0.37
Congo, Rep.	0.59	0.54	0.55	0.56	0.50	0.52	0.40	0.44	0.42		0.45	0.37
Namibia	0.36	0.49	0.45	0.79	0.54	0.63	0.40	0.44	0.42		0.45	0.37
Turkey	0.50	0.30	0.37	0.73	0.37	0.49	0.73	0.52	0.63		0.45	0.37
Kyrgyz Republic	0.57	0.42	0.47	0.33	0.47	0.42	0.41	0.44	0.42	0.5	0.45	0.45
Togo	0.61	0.73	0.69	0.12	0.49	0.37	0.41	0.43	0.42		0.44	0.37
Grenada	0.23	0.67	0.52	0.69	0.46	0.54	0.40	0.43	0.42		0.44	0.37
Cape Verde	0.50	0.57	0.55	0.78	0.37	0.51	0.40	0.43	0.42		0.44	0.37
Mexico	0.15	0.39	0.31	0.57	0.33	0.41	0.83	0.66	0.75		0.44	0.37
Ukraine	0.42	0.33	0.36	0.51	0.43	0.45	0.50	0.47	0.48	0.5	0.44	0.45
Guinea-Bissau	0.57	0.57	0.57	0.10	0.66	0.47	0.40	0.43	0.42		0.44	0.36

	일반 수원 수요	농업 수원 수요	수원 수요	일반 발전 가능성	농업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	잠재력	현재 관계	양자 관계	무상 원조 협력 대상	총점 수 (가중 치1)	총점 수 (가중 치2)
Botswana	0.30	0.62	0.51	0.81	0.38	0.52	0.41	0.43	0.42		0.44	0.36
Malaysia	0.15	0.24	0.21	0.81	0.48	0.59	0.54	0.78	0.66		0.44	0.36
Burundi	0.67	0.74	0.72	0.17	0.40	0.32	0.41	0.43	0.42		0.44	0.36
Fiji	0.41	0.43	0.43	0.30	0.52	0.44	0.40	0.43	0.42	0.5	0.44	0.45
Eritrea	0.57	0.67	0.64	0.22	0.49	0.40	0.40	0.43	0.42		0.44	0.36
Azerbaijan	0.30	0.47	0.41	0.52	0.40	0.44	0.42	0.44	0.43	0.5	0.44	0.45
El Salvador	0.35	0.44	0.41	0.53	0.40	0.44	0.42	0.44	0.43	0.5	0.43	0.44
Guyana	0.49	0.47	0.47	0.44	0.60	0.55	0.40	0.43	0.42		0.43	0.36
Samoa	0.41	0.58	0.52	0.68	0.41	0.50	0.40	0.43	0.42		0.43	0.36
Panama	0.13	0.42	0.33	0.74	0.52	0.59	0.42	0.61	0.51		0.43	0.36
Dominican Rep.	0.28	0.51	0.43	0.50	0.34	0.39	0.44	0.44	0.44	0.5	0.43	0.44
SaoTome	0.51	0.53	0.53	0.53	0.45	0.48	0.40	0.43	0.42		0.43	0.36
Haiti	0.74	0.68	0.70	0.08	0.40	0.29	0.41	0.43	0.42		0.43	0.36
Tajikistan	0.57	0.49	0.51	0.45	0.50	0.49	0.41	0.43	0.42		0.43	0.35
Guinea	0.60	0.49	0.52	0.13	0.64	0.47	0.41	0.43	0.42		0.43	0.35
Palestine	0.94	0.44	0.61	0.07	0.31	0.23	0.40	0.43	0.42	0.5	0.43	0.44
Georgia	0.60	0.48	0.52	0.76	0.32	0.47	0.41	0.43	0.42		0.42	0.35
Jamaica	0.28	0.41	0.36	0.46	0.45	0.45	0.41	0.43	0.42	0.5	0.42	0.43
Swaziland	0.39	0.64	0.55	0.41	0.42	0.42	0.40	0.44	0.42		0.42	0.35
Belize	0.33	0.51	0.45	0.58	0.48	0.51	0.40	0.43	0.42		0.42	0.35
Timor-Leste	0.45	0.53	0.50	0.23	0.32	0.29	0.40	0.43	0.42	0.5	0.41	0.43
Turkmenistan	0.32	0.38	0.36	0.40	0.44	0.42	0.41	0.43	0.42	0.5	0.41	0.43
St. Lucia	0.21	0.51	0.41	0.71	0.46	0.54	0.40	0.43	0.42		0.41	0.34
Vanuatu	0.40	0.52	0.48	0.59	0.41	0.47	0.40	0.43	0.42		0.41	0.34
South Africa	0.46	0.35	0.39	0.76	0.27	0.43	0.59	0.50	0.55		0.41	0.34
Albania	0.35	0.48	0.44	0.57	0.46	0.50	0.41	0.43	0.42		0.41	0.34
Colombia	0.46	0.31	0.36	0.25	0.35	0.32	0.55	0.46	0.51	0.5	0.41	0.42
St. Kitts	0.12	0.56	0.41	0.78	0.39	0.52	0.40	0.43	0.42		0.40	0.34
Seychelles	0.11	0.51	0.38	0.61	0.47	0.52	0.40	0.43	0.42		0.39	0.33
St. Vincent	0.22	0.46	0.38	0.78	0.38	0.52	0.40	0.43	0.42		0.39	0.33
Argentina	0.14	0.26	0.22	0.52	0.48	0.49	0.69	0.48	0.59		0.39	0.32
Solomon Islands	0.54	0.34	0.41	0.32	0.55	0.47	0.40	0.43	0.42		0.39	0.32
Lesotho	0.53	0.38	0.43	0.59	0.37	0.44	0.40	0.43	0.42		0.39	0.32
Dominica	0.23	0.32	0.29	0.70	0.51	0.58	0.40	0.43	0.42		0.39	0.32
Kiribati	0.44	0.33	0.37	0.46	0.52	0.50	0.40	0.43	0.42		0.38	0.32
Tonga	0.42	0.41	0.41	0.33	0.50	0.44	0.40	0.43	0.42		0.38	0.32
Moldova	0.52	0.44	0.46	0.44	0.34	0.38	0.40	0.43	0.42		0.38	0.31

	일반 수원 수요	농업 수원 수요	수원 수요	일반 발전 가능성	농업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	잠재력	현재 관계	양자 관계	무상 원조 협력 대상	총점 수 (가중 치1)	총점 수 (가중 치2)
Djibouti	0.51	0.55	0.54	0.35	0.27	0.30	0.40	0.43	0.42		0.38	0.31
Suriname	0.32	0.38	0.36	0.67	0.37	0.47	0.40	0.43	0.42		0.37	0.31
Ecuador	0.30	0.24	0.26	0.32	0.39	0.37	0.43	0.45	0.44	0.5	0.37	0.39
Belarus	0.16	0.39	0.31	0.44	0.50	0.48	0.43	0.44	0.43		0.37	0.31
Syria	0.42	0.33	0.36	0.31	0.47	0.41	0.44	0.45	0.45		0.37	0.31
Papua New Guinea	0.56	0.28	0.37	0.20	0.52	0.42	0.41	0.44	0.43		0.36	0.30
Maldives	0.37	0.46	0.43	0.57	0.26	0.37	0.40	0.43	0.42		0.36	0.30
Romania	0.12	0.35	0.28	0.71	0.31	0.45	0.47	0.45	0.46		0.35	0.30
Uruguay	0.14	0.17	0.16	0.72	0.52	0.59	0.42	0.44	0.43		0.35	0.29
Bosnia	0.34	0.32	0.32	0.54	0.35	0.42	0.41	0.43	0.42		0.35	0.29
Serbia	0.42	0.31	0.35	0.61	0.27	0.39	0.42	0.44	0.43		0.35	0.29
Gabon	0.14	0.45	0.35	0.21	0.48	0.39	0.40	0.44	0.42		0.35	0.29
Chile	0.14	0.22	0.19	0.60	0.30	0.40	0.50	0.62	0.56		0.34	0.29
Marshall Islands	0.41	0.31	0.34	0.25	0.46	0.39	0.40	0.43	0.42		0.34	0.29
Costa Rica	0.17	0.17	0.17	0.78	0.41	0.53	0.42	0.44	0.43		0.34	0.28
Venezuela, RB	0.14	0.38	0.30	0.29	0.34	0.33	0.56	0.45	0.50		0.34	0.28
Macedonia, FYR	0.24	0.32	0.30	0.56	0.30	0.38	0.40	0.43	0.42		0.33	0.27
Bulgaria	0.15	0.28	0.24	0.71	0.28	0.43	0.42	0.44	0.43		0.33	0.27
Micronesia	0.47	0.31	0.36	0.32	0.28	0.30	0.40	0.43	0.42		0.32	0.27
Mauritius	0.15	0.45	0.35	0.30	0.28	0.28	0.40	0.43	0.42		0.32	0.26
Kosovo	0.36	0.31	0.33	0.23	0.35	0.31	0.40	0.43	0.42		0.32	0.26
Montenegro	0.14	0.26	0.22	0.64	0.30	0.41	0.40	0.43	0.42		0.31	0.26
Lebanon	0.40	0.25	0.30	0.35	0.27	0.30	0.42	0.44	0.43		0.31	0.26
Palau	0.18	0.31	0.27	0.38	0.27	0.31	0.40	0.43	0.42		0.30	0.25

부표 5. 국가의 요소별 및 전체 순위

	수원수요 순위	발전가능성 순위	양자관계 순위	순위 (가중치1)	순위 (가중치2)
Ethiopia	1	7	26	1	1
Indonesia	48	61	3	2	2
China	67	86	1	3	14
Bangladesh	3	93	17	4	3
Tanzania	4	31	35	5	4
India	29	39	2	6	31
Vietnam	41	55	11	7	5
Nigeria	42	35	14	8	6
Cambodia	35	5	55	9	7
Philippines	71	53	10	10	8
Senegal	15	76	66	11	9
Mongolia	40	23	84	12	10
Zambia	12	21	60	13	21
Ghana	34	4	47	14	22
Lao PDR	49	37	81	15	11
Madagascar	19	26	57	16	23
Congo, DR.	5	91	30	17	24
Mozambique	2	9	50	18	46
Rwanda	8	3	78	19	47
Sudan	25	42	32	20	25
Pakistan	22	109	13	21	26
Sri Lanka	47	82	39	22	12
Nicaragua	24	32	74	23	27
Myanmar	37	17	31	24	28
Sierra Leone	23	2	97	25	52
Guatemala	68	50	42	26	13
Kenya	20	77	37	27	29
Peru	84	62	23	28	15
Angola	38	38	34	29	30
Paraguay	91	28	73	30	16
Morocco	51	30	27	31	32
Cameroon	33	52	46	32	33
Kazakhstan	109	18	38	33	17
Afghanistan	54	16	49	34	34

	수원수요 순위	발전가능성 순위	양자관계 순위	순위 (가중치1)	순위 (가중치2)
Liberia	10	34	33	35	58
Malawi	14	19	65	36	59
Egypt, Arab Rep.	66	125	15	37	18
Bolivia	39	60	61	38	35
Honduras	62	25	68	39	36
Yemen, Rep.	11	119	44	40	37
Niger	6	56	69	41	61
Uzbekistan	74	105	29	42	19
Brazil	118	22	4	43	62
Nepal	53	66	45	44	38
Uganda	26	44	41	45	63
Mali	36	14	72	46	64
Bhutan	87	1	117	47	65
Zimbabwe	16	126	67	48	39
Cote d'Ivoire	31	115	51	49	40
Iraq	69	133	22	50	20
Algeria	78	69	24	51	41
Gambia, The	18	78	107	52	67
Benin	21	80	79	53	68
Burkina Faso	58	8	63	54	69
Comoros	7	103	121	55	70
Central African	30	54	95	56	71
Tunisia	96	24	48	57	42
Iran, Islamic Rep.	123	104	6	58	43
Armenia	56	13	91	59	72
Thailand	108	41	8	60	73
Jordan	99	20	53	61	44
Mauritania	44	40	105	62	74
Chad	28	84	76	63	75
Congo, Rep.	46	45	85	64	76
Namibia	77	6	96	65	77
Turkey	98	64	9	66	78
Kyrgyz Republic	73	95	82	67	45
Togo	17	116	90	68	79
Grenada	59	33	126	69	80

	수원수요 순위	발전가능성 순위	양자관계 순위	순위 (가중치1)	순위 (가중치2)
Cape Verde	50	51	120	70	81
Mexico	119	101	5	71	82
Ukraine	105	79	25	72	48
Guinea-Bissau	43	70	110	73	83
Botswana	64	43	92	74	84
Malaysia	131	11	7	75	85
Burundi	9	121	88	76	86
Fiji	83	85	106	77	49
Eritrea	27	107	100	78	87
Azerbaijan	86	88	56	79	50
El Salvador	88	87	64	80	51
Guyana	72	27	113	81	88
Samoa	61	58	124	82	89
Panama	114	10	19	83	90
Dominican Rep.	81	108	43	84	53
SaoTome	55	68	131	85	91
Haiti	13	130	77	86	92
Tajikistan	63	65	87	87	93
Guinea	57	72	75	88	94
Palestine	32	134	98	89	54
Georgia	60	74	89	90	95
Jamaica	101	81	83	91	55
Swaziland	45	98	103	92	96
Belize	76	49	118	93	97
Timor-Leste	65	131	115	94	56
Turkmenistan	102	96	80	95	57
St. Lucia	90	29	116	96	98
Vanuatu	70	73	123	97	99
South Africa	93	92	18	98	100
Albania	79	59	93	99	101
Colombia	106	122	20	100	60
St. Kitts	89	47	128	101	102
Seychelles	95	46	122	102	103
St. Vincent	94	48	127	103	104
Argentina	129	63	12	104	105

	수원수요 순위	발전가능성 순위	양자관계 순위	순위 (가중치1)	순위 (가중치2)
Solomon Islands	92	71	114	105	106
Lesotho	80	90	104	106	107
Dominica	124	15	125	107	108
Kiribati	100	57	133	108	109
Tonga	85	89	130	109	110
Moldova	75	114	101	110	111
Djibouti	52	129	108	111	112
Suriname	107	75	111	112	113
Ecuador	127	117	40	113	66
Belarus	117	67	54	114	114
Syria	104	100	36	115	115
Papua New Guinea	97	99	71	116	116
Maldives	82	118	119	117	117
Romania	125	83	28	118	118
Uruguay	134	12	59	119	119
Bosnia	116	97	86	120	120
Serbia	112	111	70	121	121
Gabon	111	110	94	122	122
Chile	132	106	16	123	123
Marshall Islands	113	112	134	124	124
Costa Rica	133	36	52	125	125
Venezuela, RB	121	120	21	126	126
Macedonia, FYR	122	113	102	127	127
Bulgaria	128	94	62	128	128
Micronesia	103	128	129	129	129
Mauritius	110	132	99	130	130
Kosovo	115	123	109	131	131
Montenegro	130	102	112	132	132
Lebanon	120	127	58	133	133
Palau	126	124	132	134	134

<지표 해설 및 출처>

- 농업생산성(2008년): Agriculture value added per worker(constant 2000 US\$)- 노동자당 농업 생산가치(World Bank national accounts files and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Production Yearbook and data files)
- GDP중 농업비중(2008년): Agriculture, value added (% of GDP)- GDP대비 농업 부가가치 비율
- 1인당 경작면적(2008년): Arable land (hectares per person)- 인구당 농작가능지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electronic files and web site)
- 연평균 강수량(2008년): Average precipitation in depth (mm per year)- 연 평균 강수량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electronic files and website)
- 면적당 곡물생산량(2007년): Cereal yield (kg per hectare)- 헥타르당 곡물 생산량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electronic files and web site.)
- 곡물생산증가율(2007년): Crop production index (1999~2001=100)- 농작물 생산 지수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electronic files and web site)
- 우리나라 수출액(2009년): Export of Korea (in million\$)- 각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총액 (Direction of Trade, CD from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면적당 비료사용량(2007년): Fertilizer consumption (kilograms per hectare of arable land)- 경작 가능지 헥타르당 비료 사용량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electronic files and web site)
- 수입중 식량수입비중(2008년): Food imports (% of merchandise imports)- 총수입품 대비 음식 수입량 비율 (World Bank staff estimates from the Comtrade database maintained by 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 평균경제성장률(1999~2008년 평균): GDP growth (annual %)- 국내총생산 연성장률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and OECD National Accounts data files)
- PPP기준 국민소득(2008년): GNI per capita, PPP (current international \$)- 인구당 국내총생산 *PPP=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World Bank,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 database)
- 우리나라 수입액(2009년): Import of Korea (in million\$)- 각국에 대한 한국의 수입 총액 (Direction of Trade, CD from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총수원액(2008년):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ceived (current US\$)- 총 공적 개발 원조금액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database)

인구규모(2008년): Population, total- 총인구 ((1)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0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New York,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advanced Excel tables). Available at <http://esa.un.org/unpd/wpp2008/index.htm>. (2) Census reports and other statistical publications fr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3)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4)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Statistics and Demography Programme, (5)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Database, and (6) World bank estimates based on the data from the sources above, household surveys conducted by national agencies, Macro International,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refugees statistics from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영양부족인구비율(2008년):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 of population)- 인구대비 영양 실조 비율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http://www.fao.org/faostat/foodsecurity/index_en.htm)

Proportion of population below minimum level of dietary energy consumption- 하루 최소 칼로리 섭취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 비율 (UNStats, UNs official website)

반부패지수(2008년): World Governance indicators 2008 (Corruption)- 세계통치지수 (부패도) (The World Bank website www.worldbank.org/wbi/governance.)

정부효율성지수(2008년): World Governance indicators 2008 (government effectiveness)-세계통치지수(정부효율성) (The World Bank website www.worldbank.org/wbi/governance.)

유무상원조 중점협력 대상국(2010년): 중점협력국 리스트 (2008년 KOICA 대외 무상원조 실적 통계자료)

연구자료 D301

국제농업협력사업 중장기 추진 방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0. 12. .
발 행 2010. 12. .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 e-mail:dongyt@chol.com

ISBN: 978-89-6013-204-7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